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토론회

일시 ● 2016년 5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순서

| 세션 | | 발표주제 | 발표자 | 토론자 | 시간 |
|------------------|-----------------------------------|------------------------------|------------|-----|-------------|
| 1부 | 기조연설: 세월호 이후 2년 [사회: 김덕진] |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의 인권 | 한상희 | - | 10:30~11:00 |
| 2부 | 세월호의 정세와 인권 [사회: 김덕진] | 세월호 운동의 담론들 | 최원 | 김혜진 | 11:10~11:40 |
| | | 세월호 참사와 지배층의 대응, 그리고 인권선언 | 김혜진 | 최원 | 11:40~12:10 |
| 점심시간 12:10~13:30 | | | | | |
| 3부 | 4.16인권선언의 의미와 쟁점들 [사회: 손희정] | 4.16인권선언에 대한 정치-철학적 분석 | 이승원 | 홍철기 | 13:30~14:00 |
| | | 4.16인권선언에 대한 법학적 검토 | 오동석 | 홍성수 | 14:00~14:30 |
| | | 4.16인권선언과 운동의 주체 | 정정훈 | 정용택 | 14:30~15:00 |
| 인터세션 15:00~15:20 | | | | | |
| 4부 | 세월호 사건과 한국 인권운동 [사회: 이가원] | 세월호 사건이 한국인권운동에 던진 질문들 | 미류 | 정영섭 | 15:20~15:50 |
| | | 당사자 운동과 연대의 운동으로서 세월호 운동 | 정원옥 | 타리 | 15:50~16:20 |
| | | 세월호 운동과 인권, 그리고 여성주의 | 박이은실 | 이호연 | 16:20~16:50 |
| 인터세션 16:50~17:10 | | | | | |
| 5부 | 종합토론 [사회: 손희정] | 종합토론 | 발표자,토론자,청중 | | 17:10~18:00 |

주요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1부

세월호 이후 2년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인권과 4.16인권선언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2부

세월호의 정세와 인권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세월호 담론 검토: 원인, 트라우마, 주체성, 권리

최원 (독립연구자철학)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오고 있는 현재까지 세월호와 관련해서 출판된 텍스트는 풍족하다. 인터넷 서점에서 ‘세월호’를 검색어로 찾아볼 경우 70여권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책이 검색된다. RISS에서 검색할 경우 단행본은 200권이 훌쩍 넘으며, 여기에 계간지 특집과 개별 논문들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텍스트가 이 사건에 대해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 모든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의 원인, 트라우마 및 치유, 주체성, 권리와 같은 몇몇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제출된 의미 있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검토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록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예컨대,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세월호를 기록하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등). 또한 단행본만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한편의 책으로서는 충분한 성찰을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서적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우리는 오히려 단행본이든 논문이든 간에 충분히 밀도 있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볼까 한다.

1. 원인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논의들은 각종 음모론을 일단 제외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는 오래 동안 반복되어 온 대형 사고들과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거형 재난’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주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 찾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원인 분석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세월호 참사를 반복되는 대형 사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논의 가운데 가장 깊이 있고 내용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박상은의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사회운동, 2015)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장덕진 외)의 『세월호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한울 아카데미, 2015)이 있다.

박상은에 따르면, 사실 세월호는 “천천히 침몰”해 왔다. 1953년 1월 여객선 창경호가 침몰하여 300여명의 승객이 참변을 당했을 때, 1970년 12월 남영호가 침몰하여 326명이 숨졌을 때,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가 침몰하여 362명이 죽었을 때, 이 모든 침몰사고는 세월호 침몰과 마찬가지로 과적과 과승이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어떠한 의미 있는 안전 규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잠시 김영삼 정부가 만들었던 여객선안전규제 정비도 시간이 지나자 예산을 줄이고(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보조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규칙을 개정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들

어버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과적과승을 단속해야 할 운항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해경이 아닌 연안 해운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맡겨버렸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하여 과적과승 시 이를 어긴 직접적 당사자(선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선사의 최고경영자나 실소유주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연안해운사들이 이윤을 위해 마음 놓고 과적과승을 하도록 허락했다. 또한 같은 해 노후선박의 운행가능한도를 5년 더 연장해 30년으로 만들어 해운사들이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는 대신 낡은 선박을 그대로 운행할 수 있게 했다. 해운사의 이윤만이 정부의 관심사였지 승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사고는 단지 여객선 침몰로만 나타난 것도 아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참사 등 이윤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사건’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는 재난을 크게 ‘과거형 재난’과 ‘미래형 재난’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과거형 재난이 시스템에서 “투명성이 결여되고 규칙이 타협되”어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기술을 규정대로 쓰지 않고 오남용할 때 생기는” 재난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면(53쪽), 반면 미래형 재난은 “공간적·시간적·사회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경계가 소멸된 결과”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위험이 닥쳐옴으로써 생겨나는 재난이다(64쪽). 미래형 재난은 예컨대 중국의 동해안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그것이 한반도에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20여 년 전 일어났던 서해훼리호 침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과거형 재난에 속한다. 특히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위기”라는 문제인데, 제도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관피아’라고 일컬어지는 분권화된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어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이 안전에 대한 모든 규제들을 타협시키면서 세월호 침몰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며 새로운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처방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 책의 이러한 진단과 처방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투명성 수준이 매우 낮았어도 위계적이고 일사불란한 통제를 통해 거버넌스의 수준을 유지”했다면,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는 효과적으로 해체했지만 권위도 모두 실종되는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제도 신뢰와 높은 투명성이 결합한 사회”로 나아가지 못한 채 지체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형 재난” 자체가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봄직 하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련의 논의들은 반복되는 대형사고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한다. 사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박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대형참사로 이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월호를 좀 더 충격적인 트라우마로 경험하게 된 것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이 사실상 어떤 적극적인 구조행위에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서해훼리호의 경우 침몰 직후 40여명을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구조했지만, 군과 해경 등이 곧바로 투입되어 70여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조할 수 있었다. 비록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구조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의 경우 해경은 모든 구조를 민간업체 ‘언딘’에 일임했으며, 사실 언딘은 구조 전문 업체가 아니라 선박 인양 전문 업체로서 인명구조를 위한 훈련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조직이었다. 해경은 단 한 차례만 세월호에 접근해서

한가롭게 승무원 몇 명만 구조해 나오면서 승객들에게 ‘급히 배를 빠져 나오라’는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부재 상황을 가리켜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분노에 찬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곧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고 국가의 각종 기능들을 민영화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문제를 빼놓고 이번 세월호 사건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 또한 세월호 참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연관 지어 분석하면서, 그것을 폭력의 새로운 형상이라는 문제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최원,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폭력의 새로운 형상」, 김명희 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2016, 그린비, 128~49쪽 참조).

『눈먼 자들의 국가』(문학동네, 2014)에 실려 있는 홍철기의 글 「세월호 참사로부터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문제를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히 국가의 부재 또는 무능력의 문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력의 문제,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고 듣는 능력, 보여주고 보는 능력 자체가 유실된 문제라고 파악한다. 곧 국가를 넘어서서 사회라는 보다 근본적인 층위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의 ‘사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로부터 감각적으로 고립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개개인들을 원자화된 게임 플레이어로 환원하는 경제적 논리에 의한 통치를 조직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것을 대체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자체가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마치 자신이 유일하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정치’인양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단순한 효율성에 기반한 투명한 논리, 투명한 계산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논리와 계산을 벗어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취급한다. 앞에서 제도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논의와 달리 홍철기는 투명 사회야말로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꿈꾸는 이상에 가까우며,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투명성·합리성을 더 확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의해 불투명한 것비합리적인 것으로 배제되는 삶의 문제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다시 정치화시키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진단하게 되면 처방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주체성’을 다루는 3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 트라우마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준 트라우마는 단지 유가족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에게 발생한 엄청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와 지배자들의 대응은, 김명희의 글 「고통의 의료화: 세월호 트라우마 담론에 대한 실재론적 검토」(『보건과 사회과학』, 38집, pp. 225~45)가 지적하듯이, “사고-보상 프레임”으로의 환원과 “고통의 의료화”였다. 여기서 사고-보상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사건성을 부인하려는 것으로, 그것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취급하면서 그 ‘사고’에 대한 개별적 ‘보상’만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도록 유도하는 사고의 프레임을 말한다. 그러나 명확히 세월호 참사는 사고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보상”이나 ‘위로금’의 사안이 아니라 명백히 ‘배상’의 사안”이라고 김명희는 말한다(230쪽). 다른 한편 고통의 의료화에 대한 비판은 트라우마의 치유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적 치유가 갖는 몰사회적인 성격을 문제

삼는다. 의료적 치유는 이 문제를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의 문제로 파악하는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개인에게 가져오는 스트레스라는 결과적 차원에만 주목하는 실증적이고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시야를 한정한다. 다시 말해서 그 충격이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생겨났으며 어떻게 사고 이후 담론적인 의미화 과정 안에 기입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설명 없는 치료’, 곧 단순한 항우울제 처방이나 마인드 컨트롤 요법을 지루하게 반복하게 만드는 실천이 이어지며, 피해자들(특히 유가족)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악화되는 사태로까지 치달는다. 김명희는 “참여자의 체험과 자기 이해를 존중함으로써, 희생자를 대상화함으로써 자칫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전문가주의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실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유기체가 아니라, 일정한 개념과 믿음에 입각해 주어진 상황과 경험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인과적 행위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236쪽).

사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했을 때, 고통의 의료화와 동시에 세월호 트라우마를 더욱 더 증폭시킨 것은 세월호 유가족 및 거기에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익 세력들의 노골적인 사회적 혐오의 조장이었다.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현실문화, 2015)에 실려 있는 권명아의 글 「사건 이후의 인간학: 혼의 투쟁에 대하여」는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명아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와 또 다른 생존자들의 경험을 쫓아가면서 살아남은 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지 못했거나 대신 죽지 못했다는)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 이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이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바로 이 수치심을 착취이용함으로써 공격한다고 말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한 이들에 대해 동정이나 공감, 위로 대신 모욕을 퍼부을 뿐 아니라, ‘네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봐’라는 식”으로 말이다(53~54쪽). 곧 희생자의 고통을 조롱하고 그 고통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기어이 그들을 고통의 극한,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순수한 폭력”에 의 의지의 발로이다. 4.16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을 때 피자, 초콜릿, 치킨을 들고 나와 그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행하는 일베가 자극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희생자의 수치심이다(“너의 슬픔이 진짜 슬픔이라면 지금 이 음식을 보고 네가 어떻게 식욕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수치심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거기에 동일한 공격을 되돌려줌으로써 넘어설 것인가? 그러나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정원옥의 「애도의 정치」에서 민주주의로」는 이러한 사회적 혐오를 실천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 수긍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효과가 같다”고 말한다(328쪽). 곧 그들을 인정하든 적대시하든 간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에 준거하여 정원옥은 이러한 아포리아(aporia), 길-없음, 논리적 불가능성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길-찾기’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 되어준다고 말한다.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적과 동지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과의 관계 맺기는 애도 작업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등장”하게 되며, “적은 이제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타자가 된다”(331~32쪽). 이러한 관점에서 정원옥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단지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라는 가치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330쪽). 요컨대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할 테지만 그 과정이 단순한 통합의 과정일 수는 없기에 ‘친구와 적’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고 분할선을 탈구축하는 지난한 노력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주체성

국가의 무능력과 잘못이 명확한 방식으로 드러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시민들이 그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듯 여겨진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저항만큼이나 (유가족을 포함하여)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저항도 마찬가지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지배자들과 언론의 다양한 거짓 모략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이러한 저항(또는 저항에 대한 저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땀뿍향에서 부는 바람』에 실려 있는 진태원의 글 「세월호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 폭력, 국가, 주체화」(131~54쪽)는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진태원은 세월호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국가가 “커다란 공백이고 검은 구멍”이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첫째, 사람들은 이제껏 국가를 어떤 전능한 것으로 파악해 왔지만 사실은 지극히 무능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둘째, 사람들은 국가가 “우리의 편, 나의 편”일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145~46쪽). 다시 말해서, 국가는 무능력한 존재였을 뿐 아니라 (나와 우리를 구조할 생각이 없는) 무의지의 존재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능한 자의 무기력”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도착적으로 국가의 편에 서려고 인간됨을 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진태원은 지적한다. 왜냐하면 “대개의 개인들은 자신들이 희생자 또는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있지 않기를 바라”며, 따라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반대편(국가에 의해 버려지지 않고 선택받은 자들의 편)에 속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만일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신이 거기에 속하지 못한다면 “상상적인 방식”으로라도 거기에 속하고자 하며, 이것이 오히려 국가에 대한 대중의 맹목적인 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149쪽). 사실 이것이야말로 파시즘이 대중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희생자(예컨대 유대인)를 만들어내고 제조해 냄으로써 다른 대중들을 포섭하는 것은 과거 나치나 또 다른 파시즘 권력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따라서 진태원에 따르면, “세월호가 호명하는 것”은 단순히 ‘인민 봉기’나 ‘거리 투쟁의 선동’이 아니라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욕망하는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권력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나 기각이 아니라 어떤 대안적 정치공동체에 대한 상을 꿈꾸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은 현재의 국가 권력에 더욱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홍철기의 논문은 여기에 더해 “공적으로 말하고 듣는 관계뿐만 아니라 보이고 보는 관계를 대칭적으로 지각하고 이데 대해 논의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책임을 지고 물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 자체, 즉 “공적 능력과 관계들의 총체로서의 공적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홍철기에 따르면, 공적 공간은 기본적으로 간

접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공간이어야만 한다. 곧 어떤 사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사적 공간이며, 공적 공간은 오히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의 공적 공간은 그 자체가 다원적이고 복잡한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느니만큼 “투명성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시각화하고 언어화하는 사후적인 재현활동”을 통해서 구축되거나 재구축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곧 홍철기는 현재의 정치적 재현/대표/대의의 체제가 불투명한 것으로 기각하거나 은폐하는 비가시적인 영역들을 새롭게 재현/대표/대의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다양한 정치적 주체들 사이의 공적 토론과 논의, 갈등과 타협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의해 해체된 정치를 다시금 무대의 전면에서 등장시켜야 한다는 의미이자, 새로운 정치적 소통의 대안적 방식들을 상상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권리

그런데 “우리가 욕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새롭게 재건될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권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란 누구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목할 만한 텍스트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등으로 이루어진 ‘4.16 연대’는 산하에 ‘4.16인권선언 제정특위’를 두고 지난 1년간 300명에 가까운 추진위원들의 2차례의 전체회의, 수많은 풀뿌리 토론을 조직하여 1000건이 넘는 권리 제안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4.16 인권선언』을 작성하고 그것을 세월호 참사 2주기에 선포했다. 전문과 후문 그리고 13개의 권리 항목으로 이루어진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인권선언문은 세월호 문제가 인권 또는 권리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한 방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고,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4.16 인권 선언』이 선포될 즈음 다수의 사회과학인문학 연구자들이 논문들을 묶어 출판한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그린비, 2016년)에서도 『4.16 인권선언』을 다루는 논문이 두 편 게재되었다. 이재승은 ‘인권의 시각에서 본 세월호 사건’이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명백한 “국가범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가 범죄학은 특정한 공적 주체의 개별적인 행동과 조치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권한 배정 및 조직 에토스와 같은 구조적인 차원을 주목”하기 때문에 국가범죄의 의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음모이론”과 달리 “국가범죄를 야기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변혁하려는 목표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곧 “영리의 과잉 추구를 객관적으로 밀반침해 주는 국가 정책에 주목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정책 범죄로서 국가범죄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337~338쪽). 그리고 이재승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범죄에 맞서기 위해 요구되는 피해자 인권을 “사건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사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재승은 중앙집권적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사적인 복수를 불법화함으로써 배분적 정의의 실현자로서 스스로를 표상”할 뿐 아니라, 특히

“근대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계몽주의 사상을 수용한 까닭에 피해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감소”시켜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무력감과 소외감을 조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의 관념 아래서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정의란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간의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정의의 관념이다(346~347쪽).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참사에 대한 조사 과정 등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려고 시도하면서 “사적 복수를 허락하지는 것이냐”는 식의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한 명료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4.16 인권선언』 또한 “피해자 권리”에 대한 4조 항목에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4.16 인권선언』을 다룬 또 다른 논문은 정정훈의 「〈4.16 인권 선언〉,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인데, 정정훈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행하면서 그것을 “사고”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의 계열과 “사건”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의 계열이 갈라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후자의 계열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선언문을 실천 및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권선언』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후문 부분으로 거기에는 이러한 구절이 적혀 있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정정훈은 이러한 실천과 행동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주체” 또한 수행적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대한 데리다의 독해와 연결시킨다. 데리다는 「선언」이 인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사실상 이 선언에 대한 서명은 인민의 대표자를 자임하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의 주체로서의 인민은 선언에 앞서 실존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분석하면서, “서명은 서명자를 발명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정훈은 『4.16 인권선언』 또한 ‘우리’ 또는 ‘우리, 인민’을 발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권리들을 선언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실천들이 또한 새롭게 재건될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를 발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검토한 세월호 담론들은 새로운 정치,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더욱더 집요하고 끈질긴 실천을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세월호 담론이 다양성 안에서도 상호 수렴하고 동의하는 지점이 아닌가 한다.

세월호 담론 검토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사건에 대한 명명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와 보수단체들은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압도하는 명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학살’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세월호 침몰에 의도성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음모론에 가깝기도 하다. ‘교통사고’와 ‘학살’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세월호참사를 우리는 명명했고 그것을 사회화했는가? 사실은 세월호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웠고, 따라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명명을 뒤로 미뤄두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에 대한 담론 검토를 통해 세월호의 의미를 명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다. 그런 점에서 이 발제문의 문제의식을 담아 세월호참사를 명명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월호의 원인이나 성격에 대한 명명보다는 ‘기억’과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지키고 알리고 사회화해왔다. 학자들의 담론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담론이었던 셈이다. 세월호참사를 한번의 충격적인 사고로 만들고 지우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가 기억하고 원인을 뿌리까지 파헤쳐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명명한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키워드였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복잡하고도 직접적인 여러 원인들을 그 뿌리까지 파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즉 참사의 원인이 매우 구조적이며, 정치적이라는 사실)이 바로 ‘진실’이라는 키워드였다. 이것이 중요한 ‘담론’이었기에 새로운 명명방식보다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월호참사의 담론을 다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원인

세월호참사의 원인은 침몰의 구조적인 원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구조 실패, 진실에 대한 탄압 등 여러 국면들의 원인이 총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침몰의 원인은 규제완화와 관피아로 특징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조실패의 원인은 국가(해경과 컨트롤타워 모두)의 무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지만, 그 이후 진실에 대한 탄압 국면에서 국가가 보이는 폭력성과 일사불란한 통제양상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연관지어서 폭력의 새로운 형상’으로 제기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특히 진실은폐 과정의 폭력성은 ‘국가의 부존재’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겁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2. 트라우마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공격의 심리에 대해서 ‘적’을 사랑하기를 시도하는 심리로 설명하는데, 그 분석으로만 그치면 ‘혐오를 부추기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세력의 문제’가 뒤로 감춰진다. 어버이연합이 세월호집회를 했을 때에는 그 집회를 지시한 청와대와 자금을 낸 전경련이 숨어있었다. 세월호진실규명 반대집회에 참여한 일부는 그 혐오를 적극적으로 자기화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동원’된 아이들이었다. 그러므로

‘이웃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이라는 결론만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강화시킨 ‘정치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3. 주체성

- 발제자는 엄청난 참사를 경험하고도 주체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대중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편적인 설득력을 확보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이에 대해서 ‘공적토론과 논의, 갈등과 타협을 요구하는 정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 동의한다. 다만, 많은 이들이 주체화되지 못하고 국가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삶의 불안정성’임을 고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시켰으나 그 경제는 대단히 폭력적이며, 그런 삶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인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의 회복이 단지 합리성과 공적논의를 복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4. 권리

-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것이 나의 문제이며 모두의 권리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있다. 피해자의 권리가 제도화된 유럽에서 ‘권리’는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절차를 잘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에서의 ‘권리’는 숨어버린 인권을 다시 복원하여 그것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작업이기에 더욱 지난하다. 그리고 그것은 발제자가 이야기한대로 그 권리를 자신화하는 주체들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이기에 ‘실천’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가 특권으로 인식되는 피폐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될 수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를 위한 ‘실천’도 ‘타인을 위한 동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권리’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지배층의 대응 그리고 인권선언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 단지 특정한 시기에 벌어진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돈 중심의 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시의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기득권자들(혹은 지배층)은, 세월호참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며, 빨리 잊기를 종용한다. 세월호참사를 통해 시민들이 이 사회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될까 두려워한다.

이 발제문에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자들의 대응을 살펴보려 한다. 그들은 정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다. 이들은 언론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보수단체를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을 가졌으며, 경찰과 검찰을 통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모든 국민들의 애도와 슬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세월호참사가 이들의 대응 속에서 왜곡되고 찢겨졌으며, 진실의 은폐와 혐오가 넘쳐났다. 그 결과 이 거대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들여다보고 변화를 만들 힘을 다시 구성해나가야 한다.

1.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재난과 참사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난과 참사의 예방과 함께, 참사 이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것을 하라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공권력’을 승인하며, 각종 불편을 참아가며 예방조치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예산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훈련도 안 했다. 세월호 도입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음이 밝혀지고, 과적, 불법개조, 안전검사 등 전 영역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자인 것이다.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침몰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참사 이후에 해야 할 역할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단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책임회피와 진실은폐,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탄압, 왜곡된 이데올로기 유포 등 세월

호 문제를 덮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 정부는 생명의 구조에는 무능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는 매우 유능했다. 그 핵심은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외의 진실은 인정하지 않고 더 드러날 수 있는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한다.

정부가 세월호참사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가리는 첫번째 방식은 ‘정보의 통제’이다. 정보 통제는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국회 2차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해수부는 참사 이후 ‘언론대응’을 별도로 해왔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수많은 언론을 동원해서 ‘대규모 수색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에 대해 ‘유언비어 유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엄포하고 실제로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시민을 기소하기도 했다. 정보의 통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을 ‘음모’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린다.

두번째는 세월호 관련한 담론을 왜곡시키는 일이다. 초기에도 정부는 유가족 안에 ‘선동꾼이 끼어들었다’거나 순수하지 못한 유가족이 있다고 하면서 유가족을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분리정책이 큰 힘을 얻지 못하자, 이후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집단’으로 몰아갔다. 즉 ‘정당성에 흠집내기’ 전술로 바꾼 것이다. 그를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한 바 없는 각종 특혜를 퍼뜨리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어버이연합과 종교단체를 동원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온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다만, 시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세월호참사를 잊고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다.

세번째로는 권력과 제도의 힘을 이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핵심 담당자를 해수부 공무원으로 파견하거나 조사내용을 축소하는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했다.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파견해야 할 공무원을 제대로 파견하지 않는다면,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고발하도록 종용했다. 또한 새누리당 출신 특조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사퇴하도록 지시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2016년 6월로 임의로 해석하여 예산을 동결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행동을 하고 있다.

네번째로 공권력을 동원한 실질적 위협도 자행하였다. 세월호 계기수업이나 현장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는가 하면, 교육부에서는 노란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고, 공권력은 리본을 단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검문하며 협박하는가 하면, 집회에 나온 시민들과 유가족을 사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참사 1주기에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시민들 500여명을 연행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7명을 구속하는 등 직접적인 탄압도 진행했다.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상임운영위원 구속으로 세월호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다섯번째로 그 어떤 것도 유가족들의 의사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1인시위도 방해했고,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등 당연한 요구조차도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교실 존치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해왔다. 유가족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연대할 때에만 들어주는 시늉을 간신히 하면서 진을 빼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유가족에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심어놓고 무력감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시도는 반만 성공했다. ‘지겹다’거나 ‘그만하라’는 여론도 생겨났고 유가족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 속에서 진상규명의 의지도 제대로 사회화되지 않았고 특조위도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아픔에 함께하고자 애를 쓰는 시민들이 있으며, 특조위 외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의 힘’ 팀이나 ‘파파이스’ 등 다양한 단위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진실은폐에 대한 반발로 세월호참사에 대한 의문들이 더 많이 생겨났고 이것이 결국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로 나타났다.

2. 국회의 태도

무려 304명이 사망에 이른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사태 파악,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선 국회는 진상규명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열린 국정조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다가 결국 국정조사 자체가 유야무야 되었다.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회는 최선을 다해서 이 특별법이 올바로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무려 650만명이 동참한 이 특별법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의 핵심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여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무려 10명이나 된다. 이 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려서 특조위원들을 추천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의원들은 세월호 문제로 막말을 했거나 혹은 삼성과 로비 의혹과 연루된 이 등 문제가 많은 이들이었다. 야당 추천 특조위원들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당의 실질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도 여당 추천 의원들은 정부 지침대로 특조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그만두었을 때에 여당은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내버려두거나 해서 특조위 활동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왜곡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할 때 그 시행령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만이 시행령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바람에 결국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는 시행령에 대해서 여야 모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가 2016년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6월까지로만 특정하고 사실상 강제종료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여야가 합의해주었다. 특조위가 요구하면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고 2016년 2월에 특조위가 요구한 특검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으며,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조위의 기간을 제대로 보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도 듣지 않았다. 진상규명에서 국회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방해했다.

피해자지원과 관련해서도 국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요구하지 않았던 각종 특혜들을 임의로 법안 발의하여 마치 그것이 피해자들의 과도한 요구인양 사회문제화 하는데 기여했고, 정작

‘배보상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015년 말 국회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만들 때 피해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혀졌다. 추모지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서 임의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지만 그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

국회는 진상규명만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안전 관련한 입법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카르텔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밝혀진 선명완화 등의 규제완화, 그리고 구조의 민영화를 국회는 계속 승인해왔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세월호참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바꿔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입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선주협회 등 해양산업 관련 단체 임원들이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해경과 민간 구난업체 언딘의 매개체로 지목된 해양구조협회도 거액을 후원했다. 이 가운데 해양구조협회의 설립 근거가 된 수난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2009년 이후 기부금 액수는 매우 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국해운조합의 임원들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했으며, 국가가 해운조합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 현행 해운법이 처음 발의된 2006년을 전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에 건네졌다. 세월호참사에 책임을 인정하는 이 하나 없고 이런 현실을 바꾸는 입법에도 소극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일관된 태도는 “세월호는 단순 사고일 뿐이며, 그것을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만들고 퍼뜨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한다면, 새누리당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추모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시켜버렸다. 심재철의원은 세월호유가족에 대한 특혜논란을 담은 거짓 카톡을 퍼뜨리고, 조원진의원은 세월호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고,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 ‘유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세월호 인양 불가능을 내세우며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진태 의원도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개인의 의사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을 정부와 여당이 배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일베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들이 유가족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하여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가족을 모욕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참사 이후 세월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 관리 매뉴얼 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여당의 진실은폐에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여론의 향배를 보며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저울질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새민련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었다. 두번이나 그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거부되었던 이유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2016년 6월까지만 배정한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도 이런 야당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여론의 향배와 정치적 윤희리에 따라 행

등을 바꾸어온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3. 기업들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세월호참사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부터 발생한 참사이다. 그 때의 ‘돈’은 추상적인 ‘돈’이 아니라 바로 ‘기업의 이윤’이다.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지금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논리이며, 이것은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발현되어 기득권층의 카르텔 속에 더욱 공고해진다. 세월호참사 이후 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반월시화공단의 기업들은 지침을 내려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세월호 성금도 많이 내기도 했고, 세월호참사의 전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사회가 공고하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기업의 이윤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며, 심지어는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돈벌이’를 하려는 시도도 한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유연화, 그리고 안전산업이 어떻게 이전 사회를 유지하는 선상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해운조합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완화와 안전관리의 민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냈다. 선령이 지난 배를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안전관리를 외주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해운조합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언딘 등 인양업무도 외주화할 수 있게 되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배가 출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들이 축적되어 세월호 침몰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세월호의 고박을 담당했던 업체인 우련통운의 부회장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서 20대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세월호참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결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박근혜정부는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의료영리화 추진, 건축물의 수직증축 허용,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제 폐지, 비정규직 노동 확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이것은 기업들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2016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인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 있다. 추진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농업 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유통 전에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을 완화하도록 하고, 소량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전독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규조차도 완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이 한해에 10여 명 이상 사망하고, 올해만도 벌써 네 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렸다.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는 돈을 아끼겠다면서 메틸알코올을 사용하여 네 명이 노동자를 실명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불산누출 등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일도 기업 안에서 벌어진다. 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도 외주화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 기업들이 시민들과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 기업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두려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 재난과 참사가 벌어질 때 정부가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안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구매하게 하려는 것이다. 안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요구하고, ‘첨단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안전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정부가 2017년 1월 8일부터 도입되는 재난의무보험제도에 앞서 정부와 합동방재컨설팅을 하고 있다. 2015년의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하여 정부는 1조6천억원의 보수 및 정밀진단 수요를 발굴했다고 자랑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업들의 돈벌이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더 많은 참사들이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적극적인 규제 강화 요구도 이루어지고 기업에 대한 통제 요구도 강해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런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매우 뻔뻔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금 가슴기살균제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이 2013년 6월 국회에 ‘가슴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내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 4건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사회 재벌 집단의 부도덕성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이것만이 아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전경련이 직접 개입하여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반세월호 시위를 하게 한 정황도 밝혀졌다. 어버이연합이 일당 2만원씩 탈북자를 동원하여 각종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그 중에는 광화문 광장에서는 반세월호시위도 포함되어 있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도록 했던 그 시위의 자금 지원을 전경련이 맡았다. 물론 전경련으로부터의 자금조달만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과 정부라는 기득권 카르텔이 세월호참사 이후 보수우익단체를 동원하여 반세월호시위를 벌이면서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모욕하고 사회적 변화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다. 기득권 지키기는 참으로 전방위적이다.

4. 인권선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세월호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은 많이 밝혀졌지만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세월호가 인양되고 정밀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체제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기득권층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야 모두 세월호참사를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라는 희생자들의 명령으로 읽지 않는다. 단지 기득권층 안에서 ‘현’ 정부 책임의 경중을 둘러싸고 떼밀기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참사에서 지배세력의 대응을 살피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책임이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자들을 당연히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등이 해왔던 일로 볼 때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다보면 누군가의 악마적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몇 사람의 문제로 간주하면 우리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 핵심 책임자라 할지라도 그들만 처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 관료적인 사회, 돈의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또다른 참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배층의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외쳤고 그 달라질 사회의 가능성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에 담아 보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지금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들을 전복하여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며, 그 기준 아래 사회의 법과 제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기득권층이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은 바로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그 세상을 전복해야 한다. 그래서 선언 1조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이후 바뀌어야 할 사회의 핵심가치를 밝힌 것이다. 이 원칙이 바로 선다면 외주화와 유연화, 규제완화 조치들을 되돌리게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와 안전산업도 중단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은 망할 수 있다는 전례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바뀐 이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바뀌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는, 재난과 참사는 개인적인 것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여당은 즐기차게 세월호참사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지배층은 재난과 참사를 ‘개인의 주의 부족’으로 돌리고 그 위험과 불안을 부추겨서 ‘돈을 주고 안전을 구매하라’고 속삭인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고는 늘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참사가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그것을 방치해왔던 ‘정치’의 문제이다. 그래서 인권선언 4조에서 안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며, 5조에서 정부의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7조에서 책임과 재발방지대책, 9조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

셋째, 거꾸로 된 안전의 개념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들과 시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영업비밀을 주장하고 통제에 따르라고 한다. 안전하기 위해서 CCTV를 확충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들에게 안전은 ‘영토와 재산의 안전’이며 이것을 위협하는 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시위,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안전의 주체로 선언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안전’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이다. 위험은 외부의 침략자나 혼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층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의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며, 기업과 정부를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인권선언 4조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원칙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위험에 대해 알권리법’과 ‘시민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

네번째, 재난과 참사가 이미 벌어진 이후 진실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이들에 맞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

을 멈추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정부는 ‘배보상’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진실을 덮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기득권층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로막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진실규명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인권선언 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 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바로 이런 원칙에 기초하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설령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해산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특조위를 만들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번째로 공감과 연대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기득권층은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모욕함으로써 시민들과 유가족들을 분리시키고자 했다. ‘보상금’을 내세워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했다. 이런 왜곡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감’과 ‘연대’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이다. 인권선언은 8조에서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10조에서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야기했다. 전문에서 밝힌 바처럼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 하고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걷고,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다. 함께 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많이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여섯번째,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권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실규명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한 박해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저항을 범죄로 취급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저항권’을 갖는다. 그리고 부정의 한 법과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불복 운동의 권리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 인권선언은 10조에서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며, 12조에서도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은 권리가기에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 스스로가 존엄과 안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층의 대응을 분석해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카르텔 안에서 일부에게 책임소재를 돌릴 뿐, 시민들은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진실규명도 제도권 안으로 가두고 시민들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야당 등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세월호참사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존엄과 안전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적 주체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길이다. 그리고 4.16 인권선언은 바로 그것을 결의하고 싸워나가기를 촉구하는 선언이다. 인권선언 13조는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것은 인권선언의 후문에서 밝힌 우리의 결의가 실천이 될 때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싸우는 것이기에, 그래서 인권선언은 ‘투쟁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끝>

세월호 참사와 지배층의 대응 그리고 인권선언 대한 토론문

최원 (독립연구자철학)

우선 김혜진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지배층의 대응 양상과 그 속에서 인권선언이 갖는 의미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또 사실 구구절절 올바른 분석과 말씀을 하고 계셔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에 논평자로서 참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더할 말이 없고요, 두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1. “국회는 진상규명만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전 관련 입법, 대표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그간 세월호 운동이 ‘진상규명’에 너무 매달림으로써 안전 관련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두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진행을 했다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활로가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해양 안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 다든지(시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미국 트라이앵글 화재사건 이후의 투쟁이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혜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과 참사는 개인적인 것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안전의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며, 기업과 정부를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크게 공감했는데요, 이러한 투쟁을 위해 4.16 연대 차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3부

4.16인권선언의 의미와 쟁점들

사회: 손희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야만에 대한 존엄으로의 응대

: 4.16 인권선언의 정치-철학적 의미에 관한 시론적 분석

이승원 (4.16인권선언 성안팀)

1. 존엄한 응대로서의 '선언'

야만을 야만으로 응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야만이기에 야만도 존엄도 구분이 없는 그저 아무 것도 없는 삶이다. 4.16 선언의 첫 구절처럼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야만인 것은 결국 조만간 아무도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4.16 인권선언은 야만의 시대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존엄한 응대이다. 야만적인 포획자가 사랑스럽거나 이해되거나 일말의 동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야만적 응대는 모두를 야만으로 만들어 이 참사의 아픔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추모하기도, 나아가 진실을 밝힐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4.16 선언은 어떤 전쟁이나 복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공존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과 나는 공존해야 한다. 당신은 야만을 넘어 연대와 공존의 세상으로 들어와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언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지배하는 어떤 '질서', '규범', '윤리', 법'을 넘어선다. 오히려 선언은 이 모든 장벽과 짓누름을 걷어차고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윤리,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이자 약속이다. 가해자가 용서받고 피해자가 치유받고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새로운 윤리를 만들자는 용기이다. 그래서 4.16선언은 야만을 이겨내고 모욕을 다스리는 존엄한 응대인 것이다.

2. 질문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응대를 하는가에 따라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고, 함께 공존하며 희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공존이며, 그 공존의 원칙은 '존엄'이다. 존엄하지 않은 안전, 자기 결정과 상호 존중이 없는 일방적 지배

에 의한 안전은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지된 죽음이기 때문이다.

먼저 세월호 참사의 무게를 느껴보자. 세월호 참사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질문을 던졌던 주요 사건들과 같은 위상에 있다.

분단국가 수립 시기 제주에서 발생한 ‘4.3 항쟁과 학살’, 한국 전쟁 직후 수 만 명의 좌익 전향자들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국민보도연맹 사건’, 비슷한 시기 미군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철도 아래 터널에 피신해 있던 마을 주민 수백명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여 300여명이 학살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학살사건’, 그리고 성수대교·삼풍 백화점 붕괴, 씨랜드 참사 등 무모한 경제개발과 사회적 부패가 만들어낸 참사들, 정부의 의도적 무능력과 방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최근의 메르스 사태들.

한국 현대사에서 이 사건들이 가진 공통점은 첫째 황당하고, 배신감이 들고, 분노와 좌절이 교차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들은 이 분노와 애痛的 원인제공자인 국가/정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들은 어떤 해석이 결합되는가에 따라 그 사회변동의 동학, 그 사회유지의 형이상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비극과 같은 위상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1980년 광주학살은 항쟁으로 거듭나고,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을 받쳐준 거대한 제의적 상징이 되었다. 반대로 40여 년이라는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그 실체와 전말이 밝혀지고 있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등은 반공주의라는 거대한 해석의 무게가 유리천장 효과처럼 덮어버리면서 불안과 분열과 순응 효과를 만들어왔었다.

수백 명의 생명이 의도적 구조 지체와 사실 은폐 속에서 수장된 세월호 참사라는 이 야만성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어떤 해석이 이 참사에 대한 응대가 될 것인가? 또 다른 야만적 응대인가 아니면 새로운 존엄한 응대인가? 존엄한 응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2. ‘참사’가 드러내는 것

참사는 그 시대의 야만성을 드러낸다. 국민보도연맹과 노근리 양민 학살의 참사를 담고 있는 한국전쟁은 그 시대의 성격 그 자체였다. 냉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게 새로운 야만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대가 결코 문명의 시대, 이성의 시대, 존엄과 품격의 시대, 공존의 시대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전히 계속되면서 과거라 여겨지도록 강요하는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 '지배와 착취'임을 드러냈다.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시간이 정지된 야만의 시대 그 자체이다.

해방 이후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자살률 통계년도인 2014년 현재 매일 약 40여 명이 자살로 죽었다(13836명). 한 시간에 2-3명이 약을 먹거나 몸을 던지거나 손 목에 칼을 그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엄혹한 일제 강점기에도, 절대빈곤의 시기에도 이토록 자살률은 높지 않았다. 살려고 노력했다. 살기위해 나라의 독립과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 하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자들의 삶의 존엄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자살은 대부분 생계형 자살이다. 민족, 국가,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의미있는 것,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주지못한다는 절망감이 오늘의 생계형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굳이 30년 전쟁의 참혹함이 지배하던 야만의 자연상태에서 사회를 복원하려는 유럽의 사회계약론자들의 노력(그 속에 숨어있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사회공동체의 생명은 지켜야 그 이해관계도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지 않더라도, 사회는 생명보호가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생계형 자살률이 높다는 것만큼 사회가 이상하다는 또 다른 표적이 있을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물어뜯고 죽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이 잔인하고 미친 생각이 점차 당연한 것처럼 번지고, 이를 방치하는 이 세상이 야만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법적 담론을 적용할 수도, 언어적 소통도 불가능한 자살자가 늘어나는 이 세상이 야만이 아니라면, 스스로 아무런 자기결정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선택을 해야하는 이 세상이 야만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과연 야만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의 야만은 영리하다. 영악하다고 해야 하나? 익숙함과 적응을 적절히 동원한다. 사람들이 야만을 존엄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기보다, 일상에서 늘 목격하고 경험하는 야만에 익숙하고 길들여지게 한다. 적응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만과 맞서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회의 혁신과 자기계발에 반하는 소모적인 것이라 말하면서, 사람들 스스로 야만과 공존하면서 야만이 독점한 본능적 이익들을 조금이라도 나눠가지기 위해 야만의 빈틈에서 기생하는 첨단 기술 발전에 집중하도록 한다. 존엄한 공존이 아니라 야만적 공존이다.

노동에 중독되고, 자기 계발에 모든 역량을 투여하면서, 연대와 협력, 공감에 결코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되지 않다는 판타지를 심어준다. 야만은 거대한 힘이고, 힘에 순응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하고 오히려 용기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이 시대의 이 영리한 야만성이 결코 '공존'의 가치이자 생활양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아니 오히려 그것은 공존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을 드러내는 탈구적 사건이었다. 탈구적 사건이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순수하고 완벽하다고 이해되어 온 것들, 절대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들의 허점, 결핍, 불완전성, 흔들거림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고 완벽한 것처럼 이해되도록 하는 다른 어떤 노력들, 시도들, 절대적

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어떤 환영, 착각들을 생산하는 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이고, 국민이란 무엇이며, 나아가 생명, 안전, 존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원래 당연한 것들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며 당연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의 근원과 목적을 의심하라!

3. '선언'의 정치철학적 의미

3-1. 야만적 구조에 맞서기 위한 도덕적 명령

그렇다면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절대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모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 임의적으로 연결되고 봉합된 것일 뿐이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존엄한 대응 또한 부질없는 것인가?

생각해보자. 만일 이 사회의 질서, 규범, 윤리 그리고 법적 담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참사는 그저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구조의 변종이거나, 이 합리적이고 이 구조의 논리와 법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피해자들도 위로받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참사는 비극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속성이자 적절한 때를 바로 예측하지는 못하나 가끔은 일어날 수도 있는 당연한 것이 된다. 결국 우리는 저항을 비롯 아무 것도 새롭게 할 수 없고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며 망각만을 바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참사를 자동차없는 삶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 발생하면 슬퍼만 하는 교통사고로 폄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제도적 폭력을 동원해서 처벌을 내리는 이 질서와 법이 과연 신처럼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세월호는 오히려 이 황당하고 배신감이 폭발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구조만 아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구조와 그 구조에 기생하는 권력만 아니었으면 배는 침몰하더라도 그 전에 모든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출되어 '아 역시 이 사회는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이래서 국가가, 정부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안도감과 신뢰가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구조와 권력은 단순한 사고를 아주 적극적으로 비극적 사건, 참사로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 구조가 만들어 낸 학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그래서 이 구조가 결코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 구조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고, 이 구조와 권력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허상이라 말하는 탈구적 사건이었다. 이 참사의 야만성이 구조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본성임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 즉 그저 특정 집단이 뭔가 특권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 이 구조에 맞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구조가 결코 절대적이지 않기에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정치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야만성을 여전히 지키려는 세력에 의해 억눌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억눌림의 힘이 크면 클수록,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와 권력의 본질이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야만적이며 폭력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음 또한 분명해진다. 그래서 존재의 불안함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이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4.16선언은 세월호 참사가 야만 대 야만이라는 공멸의 전쟁이 아니라, 이 야만적 구조를 바꿀 존엄한 응대라는 도덕적 명령을 명시한다. 이 도덕적 명령은 야만이 포섭한 세력들이 야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야만성은 이 구조의 불안전성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나아가 선언이 담고 있는 도덕적 명령은 구조와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모든 이들이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언이 현재의 모든 법적 담론과 권력구조를 넘어서서 힘을 갖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가 야만에서 존엄으로 변화를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변화를 위한 연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16 선언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에서 시작해서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로 선언을 맺는 이유이다.

3-2. 존엄에 대한 질문

4.16선언은 야만의 권력이 여전히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이 야만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야만을 제거하기 위해 이성이라는 탈을 쓴 또 다른 야만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과 존엄과 안전이 다시 금전면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야만을 제거하려는 이유이며, 공존을 위한 존재적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존엄하지 않은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로마시대 제사의 희생물로도 쓰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해도 어떤 윤리적, 법적 담론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는 호모 사케르가 곧 존엄하지 않은 생명이다. 한 여름 쓰나미로 온 마을이 휩쓸린 후 썩어가는 시체들의 악취와 수질 오염으로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도 구조대원들이 손끝하나 건드릴 수 없어 그 고통을 지켜봐야만 하는 달릿(불가촉천민)이 존엄하지 않은 생명이다.

존엄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 방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존엄은 생명을 그저 단순히 유지시키는,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다. 저 호모 사케르, 달릿에게 사육장의 짐승처럼 먹이만 던져주는 것이 과연 생명에 대한 존엄한 응대인가? 아니다. 존엄은 자기 결정이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기 결정이 타인의 자기 결정의 인정과 생명의 보호로 이어질 때 완성될 수 있다. 인종차별과 복종을

강요하는 식민통치, 노예제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찬 채 내 비명만이 메아리치는 골 방 속 잔인한 고문도 존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존재가 모욕 그 자체로 버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은? 우리의 노동권은? 우리의 정주권, 쉼,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은? 강요된 소비 속에서 쌓여가는 부채와 그에 따른 이 보이지 않는 종속의 비극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생계형 자살은? 모욕은 나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함께 그 침해에 대한 저항 또한 강제로 억눌려질 때 발생하는 감정이자 상태이다. 살려달라 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 놀려버렸다. 슬퍼했고, 내 가족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돈’을 언급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확산되었다. 한 두 명의 실수가 아니고, 자기정화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생명에 대한 존엄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엄이 무너지는 건, 바로 내가 나 스스로 인정받고 보호받는다 믿어왔던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배신감과 당혹감이 솟구치고 그 모든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다.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모욕을 준 대상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왜 그 동안 믿고 있었지?’ ‘그동안 나는 왜 지금의 상태가 존엄함이 훼손되지 않은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었지?’ ‘내가 믿고, 지지하고, 모든 시간과 힘을 투자했던 이 질서와 규범과 생애주기는 이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나는 나를 합리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외부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삶의 시간들은 무엇이지?’

탈권위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뤄진 나라 아니었던가? 정상적인 선거, 자유로운 토론문화, IT기술에 기반한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에 내가 속한 것은 아니었던가? 과거 거리에 나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제도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질문은 더 이상 소모적이고 따라서 혁명이란 지금과 같은 세월이 오기 전에 나타났다 사라졌던 과도기적 열정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저 야만에 대한 존엄한 대응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존엄하다는 것은 암전하다는 것인가?

3-3. 존엄한 응대

죽음을 애도하기에 더욱 더 암전하고 착하고 순응적이어야 하는 것인가? 분노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저항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취급하면서 선동하는 것인가?

존엄한 응대는 외관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 존엄한 응대는 존엄한 가치의 복원을 향한 응대이다.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중요한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 그것을 가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질문하고, 가린

것을 치우는 실천이다. 따라서 존엄한 응대는 기원을 향하며,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존엄한 응대는 먼저 우리를 뒤덮은 한 가지 환상을 거부하면서 시작한다. 몇 가지 정책과 제도를 바꾸거나 불평등한 선거 속에서도 몇몇 괜찮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진실을 지킬 수 있다는 환상. 여전히 이 야만적인 구조의 그 경계를 인정하면서 그 내부에서 존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의 헌법 1조 1항에 따라 우리의 존엄한 응대는 바로 헌법적 권리선언이자 주권의 실천이다. 역설적이다. 우리가 이 구조의 한계와 경계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 질문의 권위를 이 구조의 핵심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역설은 우리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있는 것이다. 이 항은 대한민국의 경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존엄한 응대는 그동안 우리의 수많은 요구에 의도적 무관심, 왜곡, 공권력으로 대응했던 어떤 정치세력에 계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저 환상을 넘어, 대리자가 위임자 위에 군림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현실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응대는 존엄이 아니라 순응이고 야만의 빈틈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모욕을 자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존엄성을 던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모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존엄한 응대는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개개인이 받은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면서 모욕받은 존엄성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이다. 독재,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우리에게 내세웠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개의 사회적 목표 또한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원칙 속에서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도시개발, 공공재의 사영화, 기업에 관한 탈규제, 차별적 노동정책 그리고 교육, 의료 등 모든 정부 정책 또한 이 원칙을 피해갈 수 없다.

4. 존엄한 공존을 위한 선언

4.16 선언이 담고 있는 야만에 대한 존엄한 응대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한계를 넘어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실천이다. 4.16 선언은 이것이 현재 우리의 애통함과 분노, 적대, 그리고 공멸의 위기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것이, 이 존엄한 응대 자체가 공멸에서 공존으로 바뀌는 가장 숭고한, 그리고 가장 존엄한 삶의 양식, 즉 존엄한 공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실천을 막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실천에 함께 협력해서 연대하는 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인간이 존엄성을 찾고, 다른 종과의 생명을 위한 연대이다.

“야만에 대한 존엄으로의 응대” 토론문

홍철기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1. 발표문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와 참사의 역사 혹은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세월호 참사를 연결시킨다. 하지만 오히려 세월호 참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서’의 야만성을 드러내주는 국가-학살의 통시적인 계열(4.3 항쟁/학살, 보도연맹 학살, 노근리 학살, 광주항쟁,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참사, 메르스 사태)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당사자-대변자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보다 최근의 사건들로 이루어진 공시적인 계열(용산참사, 강정마을, 밀양, 쌍용차, 옥시 사태, 강남역 살인사건)과 연관시켜야 하지 않을까? 통시적인 계열에서는 ‘국민 대 비국민’의 대립이 우세하지만, 공시적인 계열에서는 이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의 집단적 요구의 사적 성격 대 공적 성격의 대립의 틀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이고, 국민이란 무엇이며, 나아가 생명, 안전, 존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의해서 던져진 정치철학적 의미에서의 ‘우리’와 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서 정부 특히 그 중에서도 관료제에 책임을 묻고 체계적 직무유기가 원인이 된 피해의 당사자가 이 전체 과정에 참여(4.16인선언에서 ‘피해자의 권리’ 조항)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 한국에서 당사자-대변자의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비난받아왔다. 한국의 국가 권력은 이때 이중의 전략을 전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국가 권력은 당사자의 요구가 분출되는 모든 현장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리하는 대변자를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낙인찍으면서 그 역할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불순한 세력을 아예 ‘비국민’으로 배제했던 이전의 집단 학살 사건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낙인의 결과로 공적인 대변자가 결여된 당사자의 직접적 요구를 이기적인 ‘떼쓰기’로 폄하하고,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여론의 관심을 약용하는 사익추구로 비난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대변자 정치가 공적 영역에 진입하여,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이러한 주장을 공적인 언어로 번역해주는, 당사자로부터 신뢰받지만 여전히 당사자 자신은 아닌, 복수의 대변자 사이의 긴장과 협업의 관계가 발전하고 일종의 관행으로 성립되는 것이 끊임없이 방해받아 왔다고 본다. (당사자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 요구의 공적 성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대변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당사자-대변자 정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본다. ‘야만은 거대한 힘이고, 힘에 순응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하고 오히려 용기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부당한 사회에서 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당사자-대변자의 정치라고 보는데, 이때 당사자-대변자의 관계는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일반인과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엘리트 혹은 전문가 사이의 위계적 분업이 아니라 스스로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당사자와 연대하고 그들의 요구를 공적이고 제도적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대변자 사이의 수평적인 협업이자 ‘연대’에 다름 아니다. 공적 대변자의 ‘출현’은 여러 투쟁의 현장에 대해서 국가 권력과 보수 언론이 언제나 말하듯이 제3자의 불순한 개입이 아니라 민주 사회에서의 당연한 개입이자 참여이며, 바로 이러한 국가와 민간의 복수의 제3자의 참여가능성이야말로 해당 사안이 1 대 1의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 관계라는 인식을 보편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야만적 구조를 바꿀 존엄한 응대라는 도덕적 명령’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월호인권선언의 헌법학적 검토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donoh@gmail.com)

가. 들어가며

‘4·16’은 ‘헌법적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자본이 개입한 국가범죄(김종서, 2015; 김한균, 2015) 또는 ‘국가기업 범죄, 국가사회 범죄’(이재승, 2016: 152)기 때문이다. “대한국민”(헌법전문)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case’(이재승, 2016: 160)를 확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정명(定名), 진실규명, 재판과정, 피해회복, 후속조치 등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해법을 제안하며 그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적인 지위’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물이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아래 “세월호인권선언”)이다.

‘4·16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헌법체제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4·16교육체제’를 논의하고 있다(이수광 외 9인, 2015; 이수광 외 8인, 2015). 세월호인권선언은 ‘4·16헌법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대한국민”에게 묻고 있다.

그런데 4·16사건에서 국가는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구조과정에서, 대처과정에서 없었다. 국가는 책무의 주체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4·16사건에서 국가의 부재는 헌법의 부재이다. 세월호인권선언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까닭이다.

나. 인권관념의 변화

인권이념이 “그야말로 근본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놓여 있는 법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적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최소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Menke, 2012: 9). 1987년 민주화 이후 인권 또는 인권운동은 외연을 확장했지만, 국가는 ‘법에 의한 지배’를 무기 삼아 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인권’으로 인권을 호도함으로써 인민을 분리하여 통치했다. 자본도 인권을 주장한다. “자본과 권력에 대한 저항담론으로서 인권이 국가관료, 자본, 심지어 냉전적 보수주의자들의 공깃돌로 전락하고 있다.”(이재승, 2009: 92).

인권관념의 변화가 개략적으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는 데 일단 동의한다. 첫 번째 단계는 철학적 자연권으로서 사회적·문화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일정한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권 또는 인권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답을 주지 못했다. 인권은 이념일 뿐 현실성 없는 요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Menke, 2012: 13-14). 두 번째 단계에서 인권은

실정헌법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정치적-법적 현실로 등장했다. 헌법들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적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했다(Menke, 2012: 13). 인권은 국가의 틀로서 권력 통제의 사명을 안고 ‘헌법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국가는 인권의 보장주체를 자임했지만, 가장 위험한 인권침해자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45년 이후 인권 관념으로서 인권은 국제적으로 유효한 법체계의 대상이 되었다(Menke, 2012: 14). 그러나 현실은 국제인권조약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정치적 역학관계의 종속변수다. 인권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거나 배제된 채 모든 실행력을 박탈당한 자들이 기대려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반대 편에서 지배자들이 아무런 실제적 결과도 없이 미사여구나 늘어놓으려 할 때 내세운다는 평가까지 있다(Menke, 2012: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다른 개인들을 향한 요구들이 아니라 지배적인 공적 질서에 대해 제기한 요구들이다. 인권의 수범자는 지배적인 공적 질서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이다. 정치와 국가는 물론 대기업 같은 사회적 권력자를 포함한다(Menke, 2012: 37).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인민권력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유산자 중심 ‘자유(권)’의 특성은 당시 역사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의 산물이었다. 인민의 권리가 명실상부한 인민주권의 위용을 갖추어 국가권력의 중심을 형성할 때야 비로소 인권은 만개할 터전을 갖추게 된다. 인권은 국가에 대립하고 요구하는 힘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자체를 구성하는 동인으로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다. ‘명목적 헌법’에서 인권의 취약성

인권이 국가를 구성하는 규범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면, 인권은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명목적 존재로 전락하기도 한다. 헌법규범은 인권과 국가책무의 관계를 정립하지만, 인권과 국가는 헌법을 둘러싸고 긴장관계를 드러낸다. 인권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최선을 성취하기 위한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저의 기준이다(이재승, 2009: 102). 헌법 또한 그렇다. 인권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헌법에 반영되며, 하위 법규범과 국가권력작용은 헌법적 기준 이상으로 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칼 뢰벤슈타인(Karl Löwenstein)은 헌법의 조문만 보고 헌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이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하여 그 사회에서 준수되고 있는지에 따라 헌법을 구분한다. 형식적 헌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nominal) 헌법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현실의 권력과정을 규율함으로써 실효성(實效性)을 발휘하고 있는 헌법이 규범적(normative) 헌법이다.

한국의 헌법현실은 어떤가. “사실 지난 반백년의 우리 헌정사는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이 전진을 계속하던 환희와 도약의 시기가 아니라, 알몸의 국가폭력이 별건 대낮에 춤을 추던 분노와 좌절의 모진 세월이었다. 그 결과 우리 헌법은 법적 타당성은 있으나, 법적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한 조각의 휴지에 지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안성맞춤인 입헌주의의 겉모습만이라도 갖추기 위하여 이리저리 엮어 놓은 대내외홍보용 전시품과 같은 것이었다.”(국순옥, 1994: 125).

사회권은 더욱 그렇다.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자유’의 현실적 제 조건, 곧 자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 외적 조건과 전제에 관한 기본권이다(홍성방, 2009: 48; 이성환, 2010: 135 참조).¹⁾

1) 헌법재판소도 사회국가를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이해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즉 공공부조상의 일정한 사회보장수급권을 정점으로 하여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타 제반 분야에서 헌법에 따라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이찬진, 2004: 4).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근로권(제32조), 근로3권(제33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환경에 관한 권리(제35조제1항),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제36조),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제36제3항)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 헌정사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장기간의 군사독재체제와 극단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규범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이덕연, 1999: 153).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특정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소원을 인용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체적 권리”로서 사회권은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이해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²⁾고는 했지만, ‘최소한의 최소주의’는 현실적 의미가 거의 없다. 사회권 입법에서 “국민감정”³⁾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노동권의 약화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경영권’을 헌법 차원의 권리로 격상시키는 반면 노동3권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경영권은 “회사법 또는 세법상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경영상의 프리미엄’과 같이 대외적인 자산 가치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였다(조경배, 2008). 그런데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경영권이 노동3권을 제약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등장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저항하는 파업은 위법하여 형벌로 처벌한다.⁴⁾

그 이후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 파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헌법상 권리로 선언했다.⁵⁾ 당시 이용우 대법관은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 경영권을 우위에 두고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의 근거로서 헌법 제23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학설은 이미 자본 또는 기업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성낙인, 2015: 921) 특권을 부여했다.⁶⁾ 헌법재판소도 영리법인을 기본권주체로 인정했다.⁷⁾ 국민국가의 주권은 경제적 영역에서 과사가 일어나며, 공적인 영역에 대해 자본은 영향력을 확대한다.

라. 헌법에 대한 이해

교과서적 헌법개념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헌법은 ‘불책불법의 권력’을 단죄하는 ‘국가 책임·범죄 처벌법’이다. 예를 들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도 헌법은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가 범죄는 대량학살, 고문도청 등 형법상 범죄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범망을 교묘하게 피해 간 권력 악용의 부정부패와 회복불가능의 중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포함한다.

2) 헌재 2003. 7. 24. 2002헌마51; 2000. 6. 1. 98헌마216; 1998. 2. 27. 97헌가10 등; 1995. 7. 21. 93헌가14.

3)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4) 대법원 2002. 2. 26. 99도5380.

5) 대법원 2003. 7. 22. 2002도7225.

6) 기업들은 20세기 내내 기업이 ‘인간’이므로 권리장전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Hartmann, 2014: 11).

7) 헌재 1991. 6. 3. 90헌마56.

둘째, 헌법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끊임없이 여과하여 새로 써나가는 과거 청산법이다. 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⁸⁾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혁신한다.⁹⁾

셋째, 헌법은 권력의 집행기준이자 그 한계를 정하는 “기본적 인권”(헌법 제10조)의 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훼손하거나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헌법 제37조제2항)을 침해하는 정치경제사화문화적 권력의 행위를 금지한다. 헌법규범은 ‘공’ 권력과 폭력을 구별할 수 있는 국가폭력판별법이다. 국가가 물리력을 독점할 수 있는 합법성은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항상 정당성의 물음에 직면한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춘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거대조직폭력배가 장악한 불법기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진정한 의미의 ‘민법’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제2항).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에게 명령하는 규범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내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라도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권력담당자 교체를 주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민주적인 국가권력을 다시 새로이 구성할 수 있다”.

마. 세월호인권선언의 내용과 헌법적 의미

세월호인권선언은 헌법규범의 확인이면서 구체화인 동시에 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이자 저항이며, 더욱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헌법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세월호인권선언의 출발점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존 자체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이다.¹⁰⁾ 헌법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게 명령했다. 그런데 국가는 그 명령을 어겼다. 반()헌법체제 국가범죤다.

국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헌법 제34조제6항).¹¹⁾ 국회는 참사에 대처하는 입법을 하거나(헌법 제40조) 또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헌법 제61조제1항).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할 의무(헌법 제69조)가 있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헌법 제66조제4항).

선언은 세월호 참사가 하나의 사건을 넘어 “수많은 … 재난”의 표상으로서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라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¹²⁾ “인간의

8)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헌법전문).

9) 1948년 제1차 개정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약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행위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1960년 제4차 개정헌법 부칙 제17항)

10) 아래에서 세월호인권선언의 내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인용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인용부호로 처리한다.

11) 헌법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한다.

12)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었다.

선언은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다짐한다. “평양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그것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헌법전문)하는 헌법실천행위다. 그것은 반유신반독재민주화투쟁, 5·18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수많은 집회시위 등으로 이어지는 저항의 역사를 잇는다.

세월호인권선언의 구체적인 권리목록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안전권과 정부 책임, 정부의 구조 의무, 진실에 대한 권리, 책임과 재발방지, 피해자의 권리, 치유와 회복, 공감과 행동, 기억과 기록, 저항할 권리,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등이다.

세월호인권선언의 구체적 특징은 첫째,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돈”보다 앞서는 것임을 확인한 점이다. 헌법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함을 천명하고,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다. 자본권력 또한 이러한 헌법규범에 복무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헌법은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하며(제119조제2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월호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안전권을 위한 시민의 권리”가 정부 또는 국가에게 일정한 명령을 하고 있음을 구체화했다.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세월호인권선언은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화했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¹³⁾은 대량의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가 구현해야 할 이행기 정의의 원칙들을 제시한다.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치유와 재활 조치, 악법의 개폐 및 재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과 군경 공직자미디어 종사자의료인 등에 대한 인권법 및 인도법 교육,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포함한 만족과 사죄 등을 담고 있다(이재승, 2014: 220).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므로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에 기초한다. 즉 인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of 16, 2005. 12.

권에 기초해 한국 사회의 헌법적 구성 원칙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세월호인권선언이 천명한 규범명제의 단초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세월호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의 출범을 알리는 새로운 헌법선언이다.

바. 세월호인권선언과 ‘국가불신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이것이 국가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오창룡, 2014: 37).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국가시스템이 붕괴한 결과이자 그 과정이며 그것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세월호인권선언의 민주화, 정치화, 구체화, 제도화 등의 후속작업이 ‘우리’의 과제다. 세월호인권선언은 주권선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에서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주권자로서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부재를 확인한 이상 모든 권력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사법으로 기업의 범죄를 다루는 외국 법제와 한국에서 논의가 있지만, 그것의 관건이 입법, 검찰, 법원 등의 커넥션을 돌파해야 하는 점에서 지난한 과정이다. 구체적 입법의 길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헌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을 향해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저항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적·정치적 책임의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 법에 따라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해결 과제는 국회가 떠안아야 한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그것은 헌법에 따로 수권하지 않아도 입법권에 부수하는 권한이다. 오히려 국회의 책무다.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없어도 국회는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입법권 행사 여부가 심판대상이다.

개별사건이지만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당사자 및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동료 민주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회 관점에서 일반화하여 입법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원초적인 국가권력 훈육의 부재 때문이다. 무책임한 국가 대신 동료시민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고, 국가와 자본을 시민의 법정에 세워 심판해야 한다. 시민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공’ 권력성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

사. 나오며

국가폭력에 대한 보편적 시민의 응답 의무는, 부정의한 집단 구조를 형성하는 종래의 가치관과 믿음, 태도를 바꾸고, 국가폭력을 야기한 종래의 정치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이재승, 2014: 269).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책무다. 보편적 시민은 항구적인 불침번으로서 폭력을 야기한 정치와 국가구조를 영구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과거청산을 정치의 일상적 과정으로 만들어야만 한다(이재승, 2014: 270).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집권자의 고민’(집권자가 된 민주화 세력의 통치력)이나 ‘집권자가 되기 위한 고민’(민주 세력의 권력 탈환)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즉, ‘데모스의 힘’은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능력의 크기, 권력조차 그런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크기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래한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싸움은 우리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과, 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대안적 형식의 발명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다.”(고병권, 2011: 110-111).

<참고문헌>

- 고병권(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 국순옥(199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8. 125-165.
- 김중서(2015).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146-3. 2015. 2. 282-318.
- 김한균(2015).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국가범죄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본 세월호참사 대응과제. 민주법학 58. 2015. 7. 151-178.
- 오창룡(2014). 세월호 참사와 책임회피 정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무능 전략. 진보평론 61. 2014. 9. 37-52.
- 이덕연(1999). 우리는 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헌법판례연구 1. 1999. 7. 143-204.
- 이상수(2014).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밀양 송전선 분쟁. Ruggie(2014). 6-52.
- 이성환(2010). 사회권의 법적 성격. 법학논총 2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33-166.
- 이수광 외 9인(2015). 4·16교육체제 수립 기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 4.
- 이수광 외 8인(2015). 4·16교육체제 비전과 전략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 12.
- 이재승(2009).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민주법학 41. 2009. 11. 73-110.
- 이재승(2014). 한국어판 부록: 국가범죄와 아스퍼스의 책임론. Jaspers(2014). 218- 270.
- 이재승(2016).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민주법학 60. 2016. 3. 145-179.
- 이찬진(2004). 사회복지에서의 사회권적 재해석. 월간 복지동향 69. 2004. 7. 4-8.
- 조경배(2008).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민주법학 38. 2008. 12. 39-68.
- 최태섭(2016). 이 사사로운 불행. 경향신문 2016. 5. 13.
- 홍성방(2009). 독일기본법과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 11(2). 2009. 12. 47-71.
- Hartmann, Thom(하트만, 톰)(2014). 아시는 율김.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인간의 권리를 탐하는 거대 기업의 음모. 어마마마.
- Jaspers, Karl(아스퍼스, 칼)(2014). 이재승 옮김.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알피.
- Menke, Christoph(멩케, 크르스토프)/ Pollman, Arnd(폴만, 아른트)(2012). 정미라/ 주정림 옮김. 인권 철학 입문. 21세기북스.
- Ruggie, John Gerard(러기, 존 제러드)(2014). 이상수 옮김. 기업과 인권. 필맥.

토론문: 안전과 안보, 그리고 인권으로서의 안전

홍성수 (숙명여대)

1. '안전'과 '안보'

- '안전'의 의미: 피해나 위험이 없음.
- 안보=안전보장
- 헌법상 안전: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
- 안전의 두 요소: 국민 안전 + 국가 안전
- 내적 안전과 외적 안전

2. 헌법과 안전의 법이론

- 일반적 안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전문);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유럽연합기본권헌장 6조); “모든 국민은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스페인 헌법 제1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생명, 안전,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이라크헌법 제15조); “모든 사람은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캐나다헌법 제7조)

- 내적 안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30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4조 6항)

- 외적 안전: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전문); 국제 평화유지 (5조1항); 국가안전보장(37조 2항)

-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국가는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상태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안전을 통해 구체화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무엇의 안전인가?(보장법익): 생명, 신체, 명예, 자유, 재산

- 누구로부터의 안전인가? (침해자): 공권력, 사인, 자연

→ 인간안전과 국가안보의 통합

3. 인간안전의 국가안보화

- 안보는 안전의 보장이고, 안전은 인간의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국가'의 안보 또는 '외적 안보'로

환원되는 경향의 문제

1) 첫 번째 위협 - 권위주의 시대의 안보관

- 권위주의 시대의 안보와 안전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아닌 국가행위의 정당화

※ 홉스의 안전국가사상

2) 두 번째 위협: 현대사회와 국가의 기능변화

- 감시국가화 경향

- 안전사회화 (울리히벵)

-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와 경찰국가화

-> 인간안전의 국가안보화, 안전의 안보화, 안전과 인간안전의 분리

->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4. 4.16인권선언과 ‘인권’으로서의 ‘안전’

“4.16인권선언 역시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며 그 권리를 위한 ‘우리’의 행동을 결의한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보편적 권리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그 ‘우리’는 이 선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 가는 자들이 수행하는 주체화의 선언인 것이다.” (정정훈)

“세월호 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의 출범을 알리는 새로운 헌법선언이다” (오동석)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4.16 인권선언 전문)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1조)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13조)

※ 참조: 국제정치에서의 군사안보와 인간안보

- UNDP의 인간안보개발보고서(1994): 경제안보, 신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인간안보: 군사위협, 빈곤, 기아, 경제적 불평등, 인권유린, 환경파괴, 질병

4.16인권선언 -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

정정훈 (4.16인권선언 성안팀)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중에서

1. 세월호참사와 4.16인권선언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제주도를 향해 가던 세월호라는 이름의 배가 침몰된 이후, 한 시인은 이렇게 썼다.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 옛날의 바다가 아니다.”¹⁴⁾ 이 사건으로 인해 304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까지도 아홉 명이 그 생사를 알길 없이 미수습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배가 침몰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참사라고 부른다. 이 사건을 단순히 ‘사고’라 말하지 않고 ‘참사’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배의 침몰, 승객의 죽음이라는 물리적 차원에서 발생한 어떤 변화만을 의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리적 차원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은 그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특정한 관계의 망 속에서 ‘의미’를 얻게 된다.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이나 사태들과 계열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사건의 의미는 계열화의 산물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사월이라는 달의 이름이 더 이상 세월호 사건 이전의 사월과는 같을 수 없다는,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가 이제는 세월호 이전의 바다와는 같을 수 없다는 시인의 문장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세월호의 침몰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참사’로 만드는 것일까? 왜 세월호 사건 이후의 사월은 ‘옛날의 사월’이 아니며, 세월호 사건 이후의 바다는 ‘그 옛날의 바다’일 수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냉혹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죽는 일 자체는 사실 드문 일이 아니지 않은가? 교통수단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이 모두 참사의 희생자는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이 ‘우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무엇이건 이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했다.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러 침몰 현장에 도착한 해경들은 승객들은 외면하고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만을 구했다. 정부 기관에 의해 구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몰

14) 도중환, 「화인」.

한 배에 들어가 혹시라도 살아있는 생존자를 구하려는 민간 잠수사들을 해경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해했고, 정부는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호의 침몰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지 않은가? 진도 앞바다의 맹골 수도에 휘말려 전복된 세월호에서 304명이 죽음을 당하고, 9명의 미수습자를 희생시킨 이 사건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사실들의 계열 속에서 파악한다면, 그것은 ‘참사’라고 불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참사는 사건의 발생 이후 더욱 더 참사의 성격을 강하게 띄어 갔다. 언론은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로 사태를 호도했고, 정부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무력화하고 있으며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행동을 차벽과 최루액으로 억누르고 있다. 이 와중에 소위 ‘보수’세력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보상금을 탐하는 파렴치한 이들이라고 모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모독당하고, 민주주의의가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인간의 권리가 우습게 여기지고 시민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일련의 사태를 경험했다.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보수기득권세력이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규정하기 위해 벌이는 모든 작태가 세월호 사건을 더욱 참사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참사로 의미화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의 참혹성을 단지 확인하 것에 결코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세월호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그 사건은 인간에 의한 참사라고 규정하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명명은 이 같은 인적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의미화의 시도이다.

‘안전과 존엄에 관한 4.16인권선언’(이하 4.16인권선언) 운동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의미화의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다.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사건을 인권과 계열화시킴으로써 그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려고 한다. 세월호를 우발적인 교통사고, 또는 부주의에 의한 재해와 계열화하려는 자들, 세월호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돈 문제와 계열화하고, 시민들의 정의에 대한 요구를 중복좌빨과 계열화하려는 세력들은 세월호의 의미를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로 제한하려한다. 그러나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사건을 그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사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이 사회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질서와 시스템을 변화시켜가는 시발점으로 의미화하려 한다. 4.16인권선언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두고 아무것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세력에 맞서, 사건을 우리 사회의 민주적 변화의 시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의 민주주의 투쟁 선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하려는 주체들을 모으고 확인하고 그 뜻(意)을 모아서 묶어내는(結) 결의(結意)의 천명이다.

2.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정치 - 계열화의 두 양상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가장 분명한 날짜는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4.16이라는 숫자로 표기되면서 4.16은 세월호가 침몰한 날짜에만 국한되지 않는 하나의 시계열을 의미하게 되었다. 마치 4.19가 단지 1960년 4월 19일 하루만을 뜻하지 않으며, 5.18이 그저 1980년 5월 16일 한 날을 의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4.19와 5.18처럼 4.16도 그날에 시작되어 상당기간 지속되는 어떤 시간적 계

열을 의미한다. 그러나 4.16은 4.19와 5.18처럼 그 의미가 대체적으로 규명되어 종결된 시계열이 아니다. 4.16의 의미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 시계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4.16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사건의 의미는 미정의 상태이다. 그것이 미정인 이유는 이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힘들이 서로 갈등하고 길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4.16으로 표시되는 시계열은 그런 의미에서 투쟁의 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그저 교통사고나 부주의에 의한 재해로 규정하려는 세력과 그 사건을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사회적 시스템이 일으킨 참사이자 그 참사를 일으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하려는 세력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장인 것이다. 이 투쟁, 이 충돌은 세월호 사건의 의미(sens)를 어떻게 매김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며, 4.16이라는 시계열의 방향(sens)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다.¹⁵⁾

한 사건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사건이란 우선 상태가 아니다. 어떤 것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건은 상태의 변화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사건이 일어나면 동일성의 질서는 변화된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 수준, 경제질서, 정치질서에서 발생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사건부터 무표정한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아주 일상적이고 미세한 사건까지 일관된 성격이다. 사건은 무엇보다 변화이다. 그러나 그 변화로서 사건이란 무엇인가?

들뢰즈에 의하면 사건이란 물질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여기 내 앞에 있는 유리컵이 ‘깨진다’고 생각해보자. 깨진다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그 이전과 이후의 컵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컵은 깨짐으로 인해 유리 조각들로 변화되었다. 하나의 물질적 상태에서 다른 물질적 상태로의 이행이 일어난 것이다. 컵이 깨지기 이전에 그것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상태로 실존하였다. 그리고 깨진 이후에도 유리 조각들이라는 또 다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물질적 상태로 그것은 실존한다. 그런데 도대체 깨진다는 사태 그 자체는 무엇인가? 어떤 유리컵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컵의 형태를 구성하는 질서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컵의 형태가 와해되는 어떤 순간인 ‘깨진다’는 사태 자체 역시 하나의 물질적 상태인가? 깨진다는 컵과 유리조각이라는 상태와는 구별되는 사태가 아닌가?

들뢰즈는 바로 이 깨진다는 사태 그 자체를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면 사건이란 물체 그 자체는 아니지만 물체들을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물체적인 어떤 것’이다.¹⁶⁾ 깨진다는 사건 자체는 결코 온전한 컵이라는 물체의 상태에도(온전한 컵의 상태 어디에도 깨진다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각난 유리들이라는 또 다른 물체의 상태에도(조각난 유리들이라는 상태 어디에도 깨진다는 사건은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귀속되지 않는다. 사건은 이렇게 하나의 물질적 상태와 다른 물질적 상태의 사이에서 발생했다 사라진다. 그러한 한에서 깨진다는 사건은 온전한 컵이라는 물체적 상태의 경계면과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라는 물체적 상태의 경계면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다. 들뢰즈는 이 경계면을 ‘표면’이라고 부른다. “사건들은 표면에서 발생하며 안개보다도 더 일시적인 것이다.”¹⁷⁾

우리가 ‘커지다’, ‘작아지다’, ‘불어지다’, ‘푸르러지다’, ‘나뉘다’, ‘자르다’ 등등으로 의미하는 것 이들

15)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어의 sens라는 단어는 의미란 뜻과 방향이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감각이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다.

16)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1999.

17) 같은 책, 51쪽.

은 사물들의 상태가 아니며 심층에서의 혼합물도 아니다. 이들은 이 혼합물들로부터 유래하는, [물체의] 표면에서의 비물체적 사건들이다. 나무는 푸르러지고.....¹⁸⁾

그래서 들뢰즈는 사건을 표면효과라고 부르는 것이다. 커지다는 어떤 물체의 작음이라는 상태와 그 물체의 큼이라는 상태 사이에, 경계면에, 즉 표면에서 발생한다. 물체의 표면 위에서 안개처럼 찰나적으로, 눈의 깜빡임과 같이 순간적으로 명멸하는 것이 바로 표면효과로서 사건이다.

그러나 사회 안에는 오직 물체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언제나 의미와 결부된다. 컵이 깨지는 사건은 사람이 컵을 만들어 물을 마시는 세계 속에서 발생한다. 깨지기 이전의 컵은 어찌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떠났다. 나는 그 사람이 미웠다. 이제는 그가 선물로 준 컵을 보는 것마저 싫다. 이러한 항들의 연결 속에서 그 컵에 깨진다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사건의 의미 역시 규정된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의미의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건은 항상 특정한 의미를 가진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것처럼 사건의 의미는 그 사건 자체에 본질적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다. 사건은 이미 의미가 규정된 다른 사태들(항들)과 계열을 이루게 될 때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계열들 안에서 각각의 항은 오직 다른 항들과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¹⁹⁾ 그러므로 어떤 항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항이 달라지면 그 항의 의미 역시 달라진다. 사건은 어떻게 계열화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컵이 깨진다는 사건은 물체의 상태와 상태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임과 동시에 또한 물체의 세계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의미의 세계의 사이의 경계면, 즉 표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컵은 그저 물체로서만 깨지지 않는다. 그것이 깨지면서 의미 역시 만들어진다.

의미는 결코 원리나 시원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된다. 그것은 발견되거나 복구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치를 통해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고유한 차원으로서의 표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표면 효과일 뿐이다.²⁰⁾

세월호라는 사건의 의미규정 역시 이 같은 사건의 메커니즘, 의미화 메커니즘을 벗어나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둘러싼 싸움은 정확히 그 사건을 무엇과 연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계열화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세월호 사건을 해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성의,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을 더 중시해온 자본의 행태, 박근혜 대통령의 중적이 묘연한 7시간, 한국 사회의 반민주적 제도와 반인권적 질서,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책임 당사자들의 작위와 부작위에 의해 발생했던 또 다른 재난들과 계열화하는가, 아니면 매일 벌어지는 교통사고나 간혹 벌어지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해와 계열화하는가에 따라 세월호라는 사건의 의미는 달라진다.

세월호를 둘러싼 투쟁은 바로 이 두 계열 사이에서 발생한다. 편의상 그 두 계열을 각각 참사의 계열과 사고의 계열이라고 부르자. 참사의 계열은 세월호를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반민주적인 사건들,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들과 계열화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을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18) 같은 책, 52쪽.

19) 같은 책, 149쪽. 번역 일부 수정.

20) 같은 책, 151쪽.

사건, 한국 사회의 체제와 질서를 그 근저에서 변혁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사고의 계열은 세월호 사건을 그저 한국 사회에서 아쉽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사고들과 계열화함으로써 그 사건을 그 어떤 변화의 요청과도 무관한 일로 의미화하려 한다. 세월호를 둘러싼 투쟁은 이렇게 이 사건의 계열화 방식, 이 사건의 의미화를 두고 작동하고 있다.

3. 통념의 지배와 역설의 정치

이 두 계열 간의 투쟁은 처음에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편에는 규제완화, 관리감독의 소홀, 승무원의 비정규직화, 해경의 직무유기, 정부 대응의 총체적 부실 등의 항들과 세월호의 침몰 및 구조실패를 묶는 계열. 다른 한편에는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무책임, 해경 조직의 무능, 맹골수도의 급격한 조류, 세월호를 운행한 기업의 파렴치함 등의 항들과 세월호 사건을 엮어내는 계열. 이 두 계열이 초기 세월호 사건의 의미화를 둘러싸고 충돌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세월호 국면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규명 요구로 넘어가게 되고 장기화된다. 그리고 애도와 진상규명의 요구는 현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성격과 한국 사회체제를 문제삼는 보다 급진적인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항하는 세력들—정권, 보수언론, 우익대중 등—의 투쟁 역시 보다 공세적이 된다.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의 부모자격을 문제 삼고, 유가족의 요구를 자식의 죽음을 대가로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작태로 몰아붙이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중북좌파와 결부시키고, 애도의 행위를 국론분열 및 경기침체와 연결시키는 반동적 정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정치적 충돌의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의 의미는 침몰 및 구조실패의 차원을 넘어 정권의 정당성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제 참사의 계열은 세월호 사건이 배의 침몰과 구조실패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 정권의 반민주성과 돈 벌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를 손쉽게 무시하고 훼손하는 현 지배질서의 문제로 의미화한다. 반면 사고의 계열은 세월호 사건을 예기치 않은 사고일 뿐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중북좌파, 폭력세력, 경제성장의 장애물, 자식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는 파렴치한 자들, 국가를 부정하는 불순분자로 의미화하려 한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건은 물체들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기존의 의미 세계, 즉 사회 속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생성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건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사회라는 기존의 의미세계는 지배적 질서에 의해 일정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이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계열화되는 지배적 방식이 이미 존재하는 세계, 사건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양상이 미리 규정된 세계라는 것이다. 들뢰즈는 사건의 통상적인 계열화 방식, 지배적 의미화의 방식을 통념(doxa)라고 말한다.

통념은 양식(bon sens)과 공통감각(sens commun)으로 이루어져있다. 양식이란 좋은 의미(bon sens)이자 일방향(bon sens)을 뜻한다. 즉 “그것은 한쪽으로만 나 있는 방향이며,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 그에 만족하도록 하는 질서의 요구를 표현한다.”²¹⁾ 양식이란 지배질서의 입장에서 사건이 계열화되어야 하는 유일한 방향, 그것이 의미화되어야 하는 좋은 방향을 말한다. 그로부터 어긋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21) 같은 책, 155쪽.

“양식/일방향은 유일한 의미/방향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유일한 방향 일반의 원리를 규정한다. 이 원리는 주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향보다는 그 방향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을 드러내는 한이 있어도.” 기존의 의미세계란 바로 양식에 의해 사건이 계열화되어야 하는 좋은 방향이 단 하나 뿐인 세계, 그러한 일방향의 계열화에 의해 사건의 ‘좋은’ 의미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세계이다.

반면 공통감각은 주체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감각이다. 개체의 다양한 부분적 감각들을 자아라는 어떤 중심 안에서 통일해내는 것이 바로 공통감각이다. 또한 주체가 감각하는 대상의 부분들을 통일시켜내는 것 역시 공통감각이다. 공통감각을 통해 주체는 자아의 동일성과 대상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주체의 측면에서, 공통감각은 영혼의 다양한 능력들을, 또는 신체의 분화된 기관을 포함하며, 그들을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성에 관련짓는다.” 또한 “대상의 측면에서, 공통 감각은 주어진 다양성을 통일시키며 그것을 대상의 특수한 형성이나 세계의 개별화된 형상의 통일성에 관련시킨다.”²²⁾

통념은 바로 양식과 공통감각의 상호 보완적 힘 속에서 사건의 의미를 객관화함과 동시에 주관화하는 작용을 뜻한다. 어떤 사건의 의미가 특정한 방향에 따라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지속되려면 그 의미는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내면화되어야 한다. 한 사회가 사건을 의미화하는 지배적 방식으로서 통념은 이렇게 양식과 공통감각의 상보적 작용에 의해서 기능한다.

한 사회의 통념은 그러므로 권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사건을 계열화하는 유일한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의 의미를 그러한 방향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파악하는 감각을 주체가 내면화하도록 하는 작업이야말로 권력의 일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의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국가의 공권력, 거대 미디어, 막대한 자금 등의 권력 수단을 갖춘 세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사건을 의미화하는 양식을 결정하고 공통감각을 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 그리고 대자본 등이 이 사회에서 사건의 의미를 생산하는 지배적 계열화 방식, 즉 통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념이 사건을 계열화하는 일반원리를 장악하고 그것을 사회구성원에게 감각적 수준에서 내면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다른 계열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미시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그것이 사건인 이상은 사건은 항상 변화의 문제이다. 하물며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더 큰 변화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사건 자체가 기존 의미세계의 질서 그 자체를 곧장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변화하였음을 감각하게 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은 통념을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들뢰즈식으로 말하자면 통념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이 다른 방향에 따라 계열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모두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잠재적 층위에서는 언제나 지배적 계열화의 방향인 통념과 다른 방향의 계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방향,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방향에 대해 잠재적으로 평행한 방향, 즉 역설(paradoxa)이 존재한다. “역설은 바로 이 양식과 공통감각을 동시에 전복시키는 존재이다.”²³⁾ 그런 의미에서 역설은 통념의 지배에 저항하는 전복적 행위이며, 권력의 통제하는 의미의 질서를 변혁하려는 정치적 활동과 결부된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의 계열 속에서 의미화하려는 많은 투쟁들이 바로 이 역설, 또 다른 계열화를 현실화하는 정치이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참담한 죽음을 애도하고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실패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돈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우선시 되는

22) 같은 책, 159쪽. 번역 일부 수정.

23) 같은 책, 160쪽.

질서와 체제를 요구하는 다양한 투쟁들- 이 투쟁들을 총칭하여 4.16운동이라고 부르자 - 즉 4.16운동은 세월호 사건을 사고로 의미화하려는 권력의 통념(doxa)에 맞서 세월호 사건의 다른 의미를 창출해가는 역설(para-doxa)의 정치인 것이다.

4.영원한 현재인가, 사건과 더불어 닥쳐오는 장래인가

4.16인권선언 역시 바로 통념에 입각한 세월호 사건의 계열화에 대항하는 정치, 양식과 공통감각이 만들어내는 세월호의 의미와는 다른 세월호의 의미를 생산하려는 정치의 맥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왜 인권선언인가? 세월호 인양, 특별조사위원회 정상화, 단원고 희생자 교실 존치 등 당면한 투쟁들과 시급한 싸움들이 산적해 있는데 ‘인권선언’이나 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롭지 않은가? 세월호 사건을 권력의 통념과는 다르게 계열화하고 이 사회의 지배질서가 세월호 사건에 부여하려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창출하려는 정치에서 ‘인권선언’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월호라는 사건의 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들뢰즈가 사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특이성(singularité)이다. 사건이란 특이성에 의해 정의된다. 특이성은 기존의 상태를 규정하는 질서가 종결되고 다른 질서와 상태로 변화되는 점이다. 가령 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각 꼭지점, 어떤 곡선의 변곡점이 특이성이며, 물이 얼음으로 넘어가는 온도상의 점 0°C 도나 물이 기체로 변화하는 온도상의 점 100°C 가 특이성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상태가 기쁨에서 슬픔으로 변화하거나, 신체가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넘어가는 임계점이 바로 특이성이다. 시간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매우 특별한 시점이다. 그 시점은 ‘이전’의 시간성을 규정하는 질서에 의해서도, ‘이후’의 시간성을 규정하는 질서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 사건이란 특이성이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특이성으로서의 사건들로 가득 차있다. 수축과 이완을 오가는 내 심장의 박동, 얼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갖가지 표정들, 이전까지 직진하다 좌회전을 하는 방향의 전환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명멸하는 사건들의 세계이다. 들뢰즈에게는 이렇게 작고 미세한 사건들도 하나의 상태와 다른 상태를 분기해내는 특이성이지만 카이사르가 기어이 무장한 채 루비콘 강을 건넌던 순간, 1789년 7월 파리 인민이 바스티유 감옥의 문을 부숴버린 순간, 세계 제 1차 대전을 일으킨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린 순간 등과 같이 세계사의 경로를 바꾼 역사적 사건 또한 똑 같이 하나의 상태와 다른 상태를 분기해내는 특이성이다. 사건의 비존재론²⁴⁾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얼굴에 나타났다 사라진 표정이나 바스티유 감옥의 문이 열린 순간은 모두 특이성으로서의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어법의 견지에서 보자면 심장 박동이나 얼굴의 표정을 사건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 개념에 엄밀하게 입각하여 파악하자면 그러한 변화의 점들은 모두 사건이라 해야겠지만, 사건

24) 일반적으로 존재론(ontology)이란 존재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는 철학적 사유를 말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존재론이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온 존재란 결코 변화하지 않으며, 영원한 지속을 가지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있음 자체를 뜻한다. 그러나 사건이란 명멸하는 것이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전통적 존재론의 대상에서 배척되어왔다. 사건 그 자체는 있음의 정도가 가장 적은 것. 거의 없는 것과 진배 없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사건의 있음(존재)을 다루는 사유는 전통적 의미에서 존재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에 여기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존재론이 아님을 표시하기 위해 그 앞에 ‘아니다’는 뜻에서 ‘비’(非)자를 붙인다. 또한 사건은 없음, 즉 부재(不在)가 아니기에 사건의 있음을 다루는 사유를 비존재론이라고 표기한다.

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지닌 어떤 것을 뜻한다. 그것은 아마도 각 사건-특이성이 갖는 역사적, 혹은 사회적 위상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사건의 비존재론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건-특이성은 하나의 평면에 존재하지만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건-특이성의 위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들뢰즈의 사건론에 대한 이진경의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있다.

들뢰즈가 사건이란 개념을 정의할 때, 거기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상이한 위상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어떤 모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서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어떤 특이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동시에 ‘커지다’, ‘불어지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 전반과 관련된 일반적 개념으로서, 생성의 차원에서 의미의 논리를 보여 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사건을 정의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때 어떤 사건이 갖는 유별난 점, 특이한 점은 매우 약화되고 마는 것 같다.²⁵⁾

‘커지다’, ‘불어지다’와 같은 일상적 사건과 카이사르의 루비콘 도하나 파리인민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같은 수준의 사건일 수 없는 것은 그 사건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 즉 기존 질서를 흔드는 힘의 차이에서 온다. 즉, 퇴근길에 졸던 운전자가 앞 차를 들이받은 사건과 세월호의 침몰을 같은 차원의 사건이고 동등한 특이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영향력과 파급력의 정도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기성 질서를 전복해내지는 못한다. 반면 어떤 사건은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성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기성 체제의 지배 권력은 세력이 그저 방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 권력은 체제를 위협하는 사건의 파급력을 차단하고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몇몇 개인과 기관들의 실수나 무책임의 문제로 통념화하려는 세력들은 세월호의 사건적 힘을 최소화하려 한다. 세월호 사건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이들은 유가족을 자식의 죽음을 발미로 한뭇 챙기려는 패륜적 부모로 몰고 가고, 서민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기주자들로 매도한다. 세월호라는 특이성의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해 그들은 진실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 막아서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최루액과 물대포를 난사한다. 세월호 사건-특이성에 잠재된 전복적 힘을 체제 내에 가두기 위해 지배 권력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의 지배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지 못하도록, 그 사건의 힘을 무화하려드는 것이다.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은 그렇게 사건의 힘을 기성 체제 안에 가두려고 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틀 내에서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려 한다. 그렇게 의미화된 사건은 현재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는 있어도 현재의 질서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니게 된다. 권력은 이렇게 사건의 전복적 힘을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란 불가능하다고 공포한다. 변화는 없으

25) 이진경, 『대중과 흐름』, 그린비, 2012, 76~77쪽.

며 지금을 지배하는 질서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재는 영원할 것이고, 기존의 체제 아래 유지되는 현재만 지속될 것이다. 그 질서와 체제가 끝나는 미래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질서가 와해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변화로서 역사는 끝났다고 이들은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4.16운동은 역사와 결부된 정치이다. 세월호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치이다. 다시 말해 세월호 사건을 현재의 영원한 지배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도래하게 하기 위한 정치, 역사적 사건화의 정치란 말이다. 현재를 지배하는 질서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확장된 될 때, 오늘과 똑같은 내일만이 무수히 반복될 때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는 오늘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일이 올 때, 지금은 없는 것이 도래할 때 시작된다. 데리다의 개념을 차용하여 말하자면 역사는 현재의 시간적 확장으로서 미래(futur)가 아니라 현재의 질서 안에 부재하는 것이 닥쳐오는 장래(avenir)와 더불어 가능해진다. 그리고 장래는 다시 사건의 문제이다.²⁶⁾

역사의 종말, 변화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선포에 맞서 데리다는 메시아적 시간을 대립시킨다.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간이란 사건의 다른 이름이다. 메시아에 대한 데리다의 사유는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메시아성)’이라는 테제에 집약되어 있다. 현재를 지배하는 질서에 의해 규정된 시간성과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시간성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건, 혹은 타자의 도래 가능성을 개방하는 어떤 시간성의 구조가 그가 말하는 메시아성이다.

그는 이 메시아적 시간성의 구조를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등장하는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있다(The time is out of joint)’는 문장에서 발견한다. 그것은 “이접되고 이그러져 있는, ‘이음매가 어긋난’ 지금, 확실하게 연결된 어떤 맥락, 여전히 규정 가능한 경계들을 지닌 어떤 맥락 속에서 더 이상 함께 유지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음매가 떨어져나간 지금”²⁷⁾이다. 동일성이 지배하는 연속적 시간 흐름의 탈구, 공백이 없이 이어지는 폐쇄적 시간성의 완결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균열의 필연적 도래 가능성이 바로 ‘이음매에서 어긋난 시간’으로서 메시아적 시간성이다. 그러므로 메시아적 시간성이란 현존하는 지배적 시간성과는 전혀 이질적인 시간성의 열림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또한 이러한 이질적 시간성의 열림으로서 메시아성에 ‘해방의 약속’, ‘유령’, ‘도래할 민주주의’ 등의 다른 이름을 부여한다.

결코 충만한 현재의 형태로 자신을 현존화하지 않을 바로 그것을 도래하게 만들라고 명령하는 서약된 명령의 사건으로서 도래할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한한 약속(항상 지켜질 수 없는 약속,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약속은 타자의 독특성과 무한한 타자성에 대한 무한한 존중만이 아니라, 익명적 독특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셈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주체적인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과 이러한 약속에 따라 자신을 측정해야하는 것이 지니는 규정된 형태, 필연적이지만 필연적으로 부적합한 그 형태 사이의 간격의 열림이다. 이런 한에서 공산주의적 약속의 현실성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약속의 현실성은 항상 자신 안에 절대적으로 비규정적인 이러한 메시아적 희망을, 사건과 독특성, 예견 불가능한 타자성의 도래와 맺고 있는 이러한 종말론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유지해야만 한다.²⁸⁾

26) 자끄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이제이북스, 2007.

27) 같은 책, 19쪽.

28) 같은 책, 140쪽.

그러나 그에게 메시아성이란 단지 정상적인 시간경로부터 일순간의 이탈이나 현존 질서 에 대한 의지적 부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메시아성이란 해방적 경험의 ‘보편적이고 유사 초월론적 구조’²⁹⁾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란 근본적으로 사건의 도래, 타자성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메시아성은 모든 지금-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사건의 도래, 곧 가장 환원불가능하게 이질적인 타자성을 지시”³⁰⁾하는 것이다. 이 사건, 타자성의 도래야 말로 동일한 것의 연속성에 의해 규정된 시간, 질적 차원의 변화란 존재하지 않는 시간(‘역사의 종말!’)에 종말을 가져오며 ‘장래’(avenir)를 열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4.16운동은 세월호 사건이 현재를 지배하는 질서의 영속성을 탈구시키는 정치, 그러한 탈구를 통해 지금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도래하게 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세월호 사건을 영원한 현재의 지배 안에 가두고, 그 전복적 가능성을 차폐시키고자 하는 통념의 지배에 맞서 장래를 시작하려는 정치이다. 사건과 함께 시작되는 역사를 위한 정치이자 세월호 사건을 역사적으로 사건화하려는 정치인 것이다.

5.선언과 주체화

2016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지 2주년이 되어간다. 사건이 발발한 초기에는 대통령도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의 현 대표인 김무성 의원도 한국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말하면서 근본적 변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과 다짐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2년 가까운 세월이 증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을 동원하여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현재의 질서 안에 가두고, 그 의미를 축소하며 변화를 거부했다. 세월호 사건을 계열화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력은 여전히 박근혜 정권과 그들이 대표하는 현 질서의 기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정의롭게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도록 만든 이 사회의 체제와 관행을 변혁하려는 투쟁이 빠른 시일 내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기는 힘들다. 현재를 지배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은 정부의 공권력, 거대 미디어, 공식적, 비공식적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는 우익대중조직들을 동원하여 세월호 사건을 단지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철저히 탄압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세월호는 참사가 아니라 그저 사고였을 뿐이며, 더 이상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애도를 지속하는 행동은 국가를 부정하는 불순세력의 책동에 불과하다는 의미화가 더 많은 세를 얻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건을 통념과 다른 방식으로 계열화하고, 권력이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세월호 사건에 부여하려는 정치는 지난한 고투의 시간을 통과해 가야 할 것 같다. 세월호는 현재의 지배 질서에게 “지금과는 다르게”를 요구하지만 이 질서는 세월호에게 “지금과 똑같이”를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지배질서를 영구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세월호 사건을 장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건으로 의미화하려는 투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지난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세월호

29) 자크 데리다 외, 진태원, 한형식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해체』, 도서출판 길, 2009, 226쪽.

30) 같은 책, 214쪽.

사건을 기존의 의미세계를 지배하는 통념을 전복하는 사건, 장래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을 고투의 시간을 견디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자들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데리다에게 장래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혹은 현재적 질서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에는 낯선 어떤 것, 그것과는 다른 것, 즉 타자의 도래를 뜻한다. 이 다른 것, 타자를 데리다는 유령이라고도 말한다. 유령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부재하는 것도 아니다. 죽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존재와 부재 사이의 경계면에서 출몰하는 비존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명멸을 반복하는 비존재이다.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의 시각에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지배 질서가 결코 완전히 억압할 수 없는 것, 부재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가능성의 이름이 바로 유령이다. 다시 말해, “유령은 근본적으로 장래이며, 항상 도래할 것으로 남아 있고, 도래하거나 다시 도래할 것으로서만 자신을 제시할 뿐”³¹⁾이다.

그런데 데리다에게 유령은 명령하는 자이며, 약속을 요구하는 자이다. 무엇을 명령하고 요구하는가? 마치 자기 동생에게 암살당한 햄릿의 아버지가 유령이 되어 나타나 햄릿에게 복수를, 정의를 요구하듯이 유령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데리다에게 유령이 타자성이며 장래와 연결되어 있다면 유령의 명령이란 현재의 질서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도래하도록 하라는 것, 장래의 시작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는 강렬한 요구이다. 타자의 도래, 정의의 도래, 민주주의의 도래를 위한 책임을 짊어 질 것, 현재와는 다른 장래의 시작을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에 대한 서약을 유령은 요구하며 명령한다.

비록 도래할 것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약이 존재한다.(약속, 참여의 서약, 명령, 명령에 대한 응답 등). 서약은 지금 여기에 주어져서, 아마도 어떤 결정이 이를 확증하기 이전에 주어진 다. 그리하여 이는 기다리지 않고 정의의 요구에 응답한다. 정의의 요구는 정의상 참을성 없고 비타협적이며 무조건적이다.³²⁾

즉 유령은 타자의 도래, 정의의 도래, 민주주의의 도래를 책임질 주체, 그 책임을 비타협적으로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주체를 요구한다. 이 유령의 타자이고 타자의 도래가 사건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유령의 요구는 곧 사건의 요구이다. 사건은 책임의 주체를 부른다.

4.16인권‘선언’은 바로 사건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천명이며 공포의 행위이다. 선언은 현재만이 영원하다고 선포하는 저 오만한 권력이 지배하는 시간에 종말을 고하고야 말겠다는 서약의 행위이다. 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사건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장래의 도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결의이다. 현재를 지배하는 질서가 만들어 놓은 통념이 세월호에 부여하는 의미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그러한 통념을 뚫고 세월호 사건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 길고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주체의 서약이 바로 4.16 인권선언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명령에 응답하는 주체, 사건의 요구에 책임을 다하는 주체는 선언과 함께 만들어진다. 선언은 우리를 사건의 주체로 만든다.

데리다는 「미국독립선언문」을 분석하는 글인 「독립선언들」에서 선언의 핵심에는 서명의 문제가 있다

31) 『마르크스의 유령들』, 91쪽.

32) 같은 책, 77쪽.

고 말했다. 그 선언문은 미연방공화국 인민의 이름으로 발표된다. 이 선언문의 공적 성격과 권위는 그것이 미국 인민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물론 그 문서가 공적 성격과 권위를 가진 문서임은 선언문을 작성한 자들, 채택한 자들, 즉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확인되지만, 그 대표들은 개인으로서 서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인민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따라서 서명하는 데에만, 자기 자신의 선언을 서명하는 데에만 스스로 참여하는 ‘선량한 인민’이 바로 바로 여기에 있다. 「선언」의 ‘우리’는 ‘인민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런데 이 인민은 실존하지 않는다. 인민은 이 선언에 앞서 그 자체로 실존하지 않는다. 만약 인민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가능한 서명자로서 스스로를 탄생시킨다면, 이는 이 서명 행위에 의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서명은 서명자를 발명한다. 서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일단 자신의 서명을 모두 마친 뒤에 일종의 허구적인 소급 작용에 의해서만 스스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³³⁾

4.16인권선언 역시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며 그 권리를 위한 ‘우리’의 행동을 결의한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보편적 권리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그 ‘우리’는 이 선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선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서 ‘우리’가 된다. 이 선언을 통해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우리, 인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그 선언문에 인권의 보편적 주체로서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사건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4.16인권선언은 사건의 정치를 수행하는 주체를 만들어 내고 확인하는 주체화의 장치이다. 그러므로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사건을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장치, 역사적 사건화의 장치이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 가는 자들이 수행하는 주체화의 선언인 것이다.

33) 자끄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175~176쪽.

정정훈의 「4·16 인권선언과 운동의 주체」에 대한 토론문

정용택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원)

발표자의 글³⁴⁾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추어 발표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이하 ‘4·16 인권선언’으로 약칭)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밑바탕이 된 4·16 인권운동을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라는 철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발표자의 글은 ‘4·16 인권선언’이 ‘선언’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세월호의 정치적 사건화와 그러한 세월호 사건에 응답하는 이들의 정치적 주체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음을 논증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4·16 인권선언’의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었다.³⁵⁾ 따라서 그것은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였지만, 정부는 진실 규명에 관한 요구를 억압했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라는 선박이 침몰한 사건을 넘어,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배적 차원의 사건이자 동시에 그렇게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투쟁하는 사건으로 재규정된다.

그렇기에 발표자도 지적하듯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은 단순히 세월호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참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와 반인권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인간의 존엄성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한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 운동이 담고 있는 정신을 인권의 언어로 표현한 선언문”인 ‘4·16 인권선언’의 핵심적인 성격 역시 드러나게 된다. 이를 발표자는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4·16 인권선언’은 한편으로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천명하고,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고,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따라 인간의 존엄한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려는” 권리를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사건화’의 장치이자, 다른 한편으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응답하고 책임지는 주체들을 함께 구성해 가는” 운동의 주체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주체화’의 장치라 할 수 있다.(311~312쪽)

발표자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계열화하는 싸움은 크게 두 가지 계열화, 곧 ‘참사’의 계열과 ‘사고’의 계열 간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사의 계열은 세월호 사건을 “해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성의,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을 더 중시해온 자본의 행태, 박근혜 대통령의 종적이 묘

34) 이 토론문은 발표자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그린비, 2016, 310~332쪽)에 기고한 「4·16 인권선언, 사건화와 주체의 정치」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하의 모든 발표문 인용은 그 책의 쪽수를 따른 것이다.

3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4.16연대 홈페이지(<http://rights.416act.net>) 참조.

연한 7시간, 한국 사회의 반민주적 제도와 반인권적 질서,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책임 당사자들의 작위와 부작위에 의해 발생했던 또 다른 재난들과 계열화”함으로써, “세월호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반민주적인 사건들,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들과 계열화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을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사건, 한국 사회의 체제와 질서를 그 근저에서 변혁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사고의 계열은 그것을 “매일 벌어지는 교통사고와 간혹 벌어지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해와 계열화”함으로써, 즉 “그저 한국 사회에서 아쉽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과 계열화함으로써 그 사건을 그 어떤 변화의 요청과도 무관한 일로 의미화하려 한다.”(316~317쪽)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자는 ‘4·16 인권선언’을 포함하여 “세월호 사건을 참사의 계열 속에서 의미화하려는 많은 투쟁들”을 ‘4·16운동’으로 총칭하는데, 이는 결국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통념의 지배”에 저항하고, “권력이 통제하는 의미의 질서”를 변혁하려는 정치적 활동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발표자가 ‘4·16운동’의 본질을 “세월호 사건을 사고로 의미화하려는 권력의 통념(doxa)에 맞서 세월호 사건의 다른 의미를 창출해 가는 역설(para-doxa)의 정치”에서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이 글에 한정해서 보자면, 발표자에게 지배의 문제란 ‘지배적 의미화’의 문제, 곧 ‘통념’의 문제와 거의 전적으로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은 이미 지배적 질서에 의해 의미가 일정하게 구조화된 세계, 곧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의미를 생성한 사건이다. 그런데, 기존의 의미 세계로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계열화되는 지배적 방식이 이미 존재하는 세계, 사건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양상이 미리 규정된 세계”이다. 들뢰즈를 좇아서 그는 이렇게 지배적 질서 안에서 작동하는 “사건의 통상적인 계열화 방식, 지배적 의미화의 방식” 가리켜 ‘통념(doxa)’이라고 부른다.(318쪽) 요컨대, 발표자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질서에 의해 구조화된 사건의 계열화 방식, 또는 의미화의 방식인 통념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전히 “양식과 공통 감각의 상호 보완적 힘 속에서”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객관화함과 동시에 주관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통념의 지배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4·16 운동의 핵심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319쪽)

여기서 토론자는 지배적 질서 안에서 사건의 의미를 객관화(일방향의 계열화)하는 동시에 주관화(주체의 동일성 구성, 내면화)하는 작용으로서 발표자가 제시했던 통념의 개념이 맑스주의의 전통적 개념인 이데올로기 개념과 호환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물론 토론자는 발표자의 글에서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았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발표자 자신도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있듯이, 지배적 질서와 그것에 의해 구조화된 지배적 의미화의 방식으로서의 통념 간의 개념적 구별을 맑스주의에서 물질적 생산관계와 ‘가상적 관계의 구조’, 또는 관념들의 체계로서의 구조인 ‘이데올로기’를 서로 구별하는 시도에 대응시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발표자가 정식화한 지배 질서에 대한 통념의 위상과 맑스주의에서 물질적 생산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위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건의 사회역사적 의미화와 결부된 통념이란 것이 단순히 지배적 질서의 반영이 아니라 그 나름의 독특한 내적 기제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결코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마치 이데올로기의 효과가 오직 경제라 불리는 ‘다른 장면’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³⁶⁾

36) Balibar, “The Infinite Contradiction,” *Yale French Studies*, no.88, 1995, p.160. 발리바르에 따르면, “경제는 ‘그 자신의 역사’를 갖지 않으며 이데올로기 또한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각각은 그 자체의 효

실제로 발표자 자신도 통념의 양식과 공통 감각이 주도되는 원인을 그 바깥에서 그것을 구조화하고 있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의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국가의 공권력, 거대 미디어, 막대한 자금 등의 권력 수단을 갖춘 세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사건을 의미화하는 양식을 결정하고 공통 감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 그리고 대자본 등이 이 사회에서 사건의 의미를 생산하는 지배적 계열화 방식, 즉 통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319~320쪽)

토론자는 통념에 맞서 “역설을, 또 다른 계열화를 현실화하는 정치”가 요구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배적 질서는 통념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통념의 지배를 어떤 식으로든 무너뜨리지 않고서 지배적 질서를 변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 내지는 토대, 또는 생산양식이라 불리는 구조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생산되지 않고서는 안정적으로 그 지배를 관철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념의 작동 없이는 지배적 질서 역시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념에 맞서 역설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배적 질서의 변혁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역설의 정치’만으로 과연 그 목표의 궁극적인 실현, 즉 “현재를 지배하는 질서의 영속성을 탈구시키는 정치, 그러한 탈구를 통해 지금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도래하게 하는 정치”가 실현될 것인지, 나아가 목표 자체가 선명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토론자가 보기에, “사건을 계열화하는 일반 원리를 장악하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에게 감각적 수준에서 내면화하는 작용”을 하는 통념은 그 바깥에 놓인 ‘지배적 질서’를 원인으로 놓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을뿐더러, 지배적 질서에 관한 분석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분석될 수도 없는 듯하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참사의 계열 속에서 의미화”하려는 ‘416운동’, 즉 “권력의 통념에 맞서 세월호 사건의 다른 의미를 창출해 가는 역설의 정치”는 언제나 통념을 주도하고 장악하는 조건들에 해당하는 ‘지배적 질서’에 관한 분석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것 또한 전복과 변혁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한에서만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념은 그것의 (재)생산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지배적 질서에 있기 때문에, 통념을 전복하려면 즉 “통념의 지배에 저항하는 전복적 행위이며, 권력이 통제하는 의미를 질서를 변혁하려는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려면, 결국 통념을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는 지배적 질서까지도 함께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의 글에서 통념에 맞서는 역설의 정치의 중요성만이 강조될 뿐, 통념의 외부에서, 통념의 발생 원인이자 그 작동의 조건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지배적 질서를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처럼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회과학 특히 맑스주의 전통에서 변혁적 실천은 언제나 그 변혁의 대상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발표자의 글에서 통념의 원인이 되는 그 지배적 질서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닌 사회(구성체)인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맑스주의자를 자처하는 발표자의 글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의 글 속에서 역설의 정치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즉 역설의 정치의 정치성과 관계된 문제이다.

과들을 낳는 유효한 원인인 상대방을 통해서만 역사를 갖기 때문”이다.

그는 지배적 질서를 다만 “돈벌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를 손쉽게 무시하고 훼손하는” 세계, 또는 “박근혜 정권과 보수 언론, 그리고 대자본 등”이 통념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로 묘사할 뿐, 이러한 지배적 질서가 어떤 원리에 근거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들을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명시하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도 않는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통념을 주조하고 장악해온 지배적 질서는 과연 자본주의라는 체계의 구조와 경향의 특징들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 세월호 사건을 참사로 계열화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는 지배적 질서의 동학을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구조적 분석 및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면, ‘416운동’의 이론적 실천은 더 이상 특정한 권력자 및 지배 세력을 지배적 질서 그 자체로 실체화하여 그들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도덕적 분노나 사법적 재단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발표자는 글의 후반부에서 데리다의 메시아적 시간성의 개념을 빌려와 “작금의 지배 질서를 영구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세월호 사건을 장래를 가능하게 사건으로 의미화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주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328쪽)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416 인권선언’이 “사건의 정치를 수행하는 주체를 만들어 내고 확인하는 주체화의 장치”라 주장한다. ‘416 인권선언’을 통해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우리, 인민’”, “서명의 행위를 통해 ‘세월호’의 요구에 응답하는 ‘주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331~332쪽) 실제로, ‘416 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권리 선언’의 항목들을 통해, 이러한 사건의 주체, 혹은 정치의 주체가 ‘선언’이라는 정치적 행위 또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사건을 통해 탄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조의 변혁’이라는 쟁점이 정치의 ‘타율성’이라는 형태로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즉 모든 지배와 종속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주체 없이 구조 역시 변혁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보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모든 외적 조건으로부터 자율적인 정치적 주체로 구성된 대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의 변혁이란 현실적으로 그 지속 가능한 형식을 결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율적인 대중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변혁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변혁을 통해 이룩할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가 모호하다면, 그들이 얻어낸 정치적 자율성과 구조의 변혁 사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토론자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① “기존의 의미 세계를 지배하는 통념을 전복하는 사건”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의미화하려는, 이른바 ‘역설의 정치’가 과연 정치의 자율성과 구조의 변혁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② ‘416 인권선언’이 만들어내는 보편적 권리의 주체, 또는 그들을 통해 표현된 정치의 자율성과 구조의 변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의 문제.

주요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4부

세월호 사건과 한국 인권운동

사회: 이가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세월호 사건이 한국인권운동에 던진 질문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416인권선언제정특위)

0. 낯선 시간

“체육관에 칸막이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월호 침몰 후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다. 인권단체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명쾌하게 말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짐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욱 많은 정보가 넘나들고 공동의 토의가 가능한 공간을 더 바라지는 않을까?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참사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간 사람들이 겪는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단순하게 대답하고 끊어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 당황했다.

기자의 질문은 당혹스럽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 맴돌던 어떤 질문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나와 버린 순간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마주한 인권운동은 어디쯤에 있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는 낯설었다.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데 생각은 잘 정리되지 않았다. 사건의 크기나 범위 같은 것들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려 애썼지만 잘 설명되지 않는 강렬함과 거대함을 느꼈다. ‘인권’이 명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지까지 묻게 되었다.

아직 이 모든 질문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2년이 더 흐른 지금, 한번쯤은 세월호참사가 한국 인권운동에 던진 질문들을 되짚어보고 지금 마주한 질문을 가늠해보려고 한다. 이 글은 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궤적을 쫓아갈 것이다. 노파심에서 언급하자면, 416인권선언은 세월호참사가 건넨 질문에 대한 인권운동의 답이기도 않으며 유일한 답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인권’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세월호 참사에 접속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질문을 헤아리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1. 인권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가

참사 초기부터 침몰의 원인과 배경, 죽음과 애도, 진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인권’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다. 인권의 언어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흔히 자유권이라 불리는 것을 중심으로 인권이 이해되어 온 영향도 있다. 인권 ‘침해’로 인지되는 매우 협소한 분야에서만 인권이 통했다. 생명권은 근대 인권의 태동부터 핵심 권리 중 하나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생명권이 주로 다루는 쟁점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가까웠다. 사형제 폐지가 인권의 쟁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을 권리’로서의 생명권을 한국사회는 아직 얘기해보지 못했다.

물론 인권운동은 이런 이해를 넓히기 위해 애써왔다. 자유권조차도 ‘침해’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 이상

을 말해왔다. 인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것은 인권운동의 주요한 고민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마주한 인권운동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무거웠다. 당시 분위기를 떠올리면 인권운동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여러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던 강정마을 인간띠잇기조차 멈췄다.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죄책감이 운동을 내리놓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야기한 비극이라는 사회운동가들의 직관은, 그저 ‘미안하다’는 시민들의 직관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었다.”³⁷⁾

그러나 인권운동은 먼저 말을 꺼냈다. 많은 운동단체들이 추모와 애도의 표시 외에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던 때다. 경찰이 진도대교를 건너려는 유가족을 가로막는 모습이 인권단체들을 말하게 했다.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분위기에서 인권의 언어가 조금 덜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경찰은 인권운동이 자주 부딪치는 영역이고 그만큼 익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참사 앞에서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꺼내야 할 말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절박했다. 다행히 어떤 말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권의 기초가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 초안과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성명이 만들어졌다. 성명은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보장하라,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내용을 담았다³⁸⁾. 인권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포기하지 않았다. ‘인권’은 그 이상이고 그래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이 모였다. 여러 인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주목하는 문제나 실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막막했다. 더듬거리며 길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들이 필요했다. 절박함이 깃들었던가. 긴급간담회가 일요일 오전 10시에 잡혔다³⁹⁾.

2. 인권의 이름으로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긴급간담회가 열린 날 길게 토론된 쟁점은 ‘안전’이었다. 전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경찰국가화를 동

37) 박준도, ‘사회운동과 세월호’, 〈인권오름〉 429호, 2015.3.12.

38)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성명 (2014.4.23.)

39)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기 위해 간담회 제안 메일 내용을 옮긴다.

“뿌옇게 흐리던 하늘이 말갈게 개인 아침이네요. 우리의 슬픔과 분노들도 조금씩 투명해지기를 바라며 메일 띄웁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몸들이 있고, 갑작스럽고 억울한 죽음의 소식에 원통함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 살아 돌아와도 안도의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민낯을 직면하고 슬픔과 분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박근혜가 책임이라는 요구는 우리들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듯합니다. 지금의 이 걱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흩어져, 저마다 홀로 져야 할 삶의 무게만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정부와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대로 가지들 쳐낸 후 다시 굳건히 남은 것이 '사회'를 해체해왔던 정권과 자본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 애써왔던 운동들이 기댈 곳 되지 못하고 '사회'의 부재만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남아서는 안되지 않을까... 막막하지만, 우리가 함께 겪는 이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 행동하며 만들어가야 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메일을 받아보는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작은 움직임들을 만들고 있을 듯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서로를 보이며 더 큰 힘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작은 움직임이 저절로 큰 기적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책임을 나누어야 할 큰 기적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제안드립니다.“

반하며 ‘안전’을 사회 통제의 담론으로 삼아왔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기조 중 하나를 ‘안전’으로 삼았다. ‘국민행복’은 ‘법치와 안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다. 권력이 휘두르는 안전의 논리는 표현의자유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등을 후퇴시켰고 소수자의 인권을 제압하는 말로 사용되어왔다. 그래서 안전은 인권운동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고 수년째 토론을 이어가며 전전긍긍하는 말이었다⁴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운동은 ‘안전’을 비판하는 방향에서 입장을 냈고 ‘안전’이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말을 찾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로 직면하게 된 현실 앞에서 안전을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가져와 쓸 수 있는 말도 아니었다. 고민을 나눈 끝에 ‘안전’을 존엄에 대한 권리로 제기해보자 했지만 복잡다단한 마음들이 명쾌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실마리를 찾아가야 했고 안전을 다루기로 한 이상 우리의 답을 내놓아야 했다. ‘영토와 재산의 안전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위한 안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오로지 인권활동가들의 축이랄까, 감수성이랄까, 미약한 등불을 앞세워 우리는 더듬더듬 길을 찾아 갔다.”⁴¹⁾

이후 구성된 존엄과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은 통상 인권단체라 불리지 않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였다. 노동과 건강을 고민해온 이들은 참사의 배경과 경과에서 낯익은 장면들을 발견해냈다. 환경을 고민해온 이들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보는 시야를 확장시켰다. 세월호 참사를 건너뛰지 않기 위해 생전 볼 일 없었던 ‘해양사고’ 자료들을 뒤졌고, 세월호 참사에 간하지 않기 위해 해외의 경험들을 살폈다. 이런 과정에서 안전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은 위협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⁴²⁾.

여전히 ‘안전’에 관한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안전을 둘러싼 여러 인권 쟁점들도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임을 선언했다⁴³⁾. 적어도 이제 인권운동은 안전을 우회하지는 않는다. 신체의 안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고민을 삶의 안전으로 확장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3. 인권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서 말한 긴급간담회에서 인권단체들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 요구들을 만들고, 여기저기에서 지적되는 구조적 문제들이 추상적 분노로 흩어지지 않는 대중적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안전을 위협하는 권력의 불평등에

40) 안전이 인권운동의 구체적 쟁점이 된 계기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킨다는 기치 아래 추진되었던 성범죄자 형벌 강화였다. 그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안전은 언제나 인권운동의 쟁점이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각종 억압적 법제도, 이주노동자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배제 정책들 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41) 장여경,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인권오름〉 428호, 2015.3.5.

42) 존엄안전위원회가 해소된 후 안전대안팀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로 이어지고 현재 종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기업살인법이 노동현장을 넘어 삶의 모든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43)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전문 셋째 단락

맞설 수 있는 힘을 통해 생명과 존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인권의 언어가 미끄러지는 지점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였다. 인권의 목록에만 기대지 않되 인권의 감각을 붙들려고 했다. 이어서 열린 범인권단체간담회에서 ‘존엄과 안전 위원회’ 구성이 제안된다. 위원회의 방향과 과제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내주지 않겠다, △애도를 받거나 애도를 할 권리를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권리와 책임의 구조를 만들자, △존엄과 안전을 위한 생명선언이 제시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게 되며 각 과제를 수임하기 위해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을 두게 된다⁴⁴⁾.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월호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특별법 제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실천들을 벌여왔다.

인권운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역에서 발빠른 대응을 시작했다. 진도체육관에서 발각된 피해자 감시, 진도대교를 가로막은 경찰, ‘유언비어 강력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참사 초기부터 문제로 확인되었다. 거리와 광장에서 모이거나 움직이는 행동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저지하는 힘도 강력해졌다. 자유팀은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쳐냈다. 집회시위나 표현의 자유는 인권운동의 역량이 축적된 영역인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경험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의 활동에서 부딪쳤던 벽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 도전을 했다⁴⁵⁾. 평등팀은 인권운동이 버려온 반차별 감수성에 기대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참사 초기 전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감과 애도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애썼다. ‘아이’를 호출하는 어떤 애도의 말들⁴⁶⁾은 ‘아이’로 포함할 수 없는 다른 희생자들을 보지 못하게 했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참사에 깊숙이 끌려들어간 민간잠수사나 진도어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비단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는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만나야 했다⁴⁷⁾.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인권운동에서 익숙한 활동이다. 그러나 평등팀이 만나려 했던 사람들은 아직 ‘인권침해’를 호소하지 않았다. 인권단체가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을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미 사회적 애도는 단원과 희생학생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 외 희생자 가족들이 느껴야 했던 소외감은 총체적이었다. 소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던 인권운동의 경험이 있어 심호흡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들은 그리 멀리 퍼

44) 당시 인권단체들의 고민이 존엄과안전위원회로 모두 수렴된 것은 아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눈 여러 고민들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으로도 이어진다. 작가기록단은 인권운동 밖에서 제안되어 시작됐고 독자적인 과제를 가졌지만, 수년간 구술기록활동을 통해 인권의 말하기 듣기를 고민해왔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건넨 질문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답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5) 자유팀은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그 결과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금지처분이 위법했다고 판결했고 2016년 3월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감시단 활동도 현장 대응과 사후 보고서 작성을 넘어서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활동까지 벌였다. 한편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구속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실이 폭로되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며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현재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응 활동은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로 이어져, 국가의 부당한 폭력 앞에 개개의 시민이 홀로 내맡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46) 이것은 세월호 담론에 아직까지도 강하게 배어 있다. ‘가만히 있으라’를 해석하는 담론들, ‘책임’에 대한 담론들은 여전히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대하기보다는 비-성인의 자리에 두며 나이와 역량을 위계화한다. 4.16운동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이라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제다.

47) 그러나 이런 고민은 ‘모두의 문제’로 여겨지기 어려웠다. 고민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누군가에게 불편한 것이기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지지 못했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힘에 겨웠다⁴⁸⁾. 그러나 평등팀은 “평등한 사회가 안전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근원적인 평등이 안전을 위한 길⁴⁹⁾”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에 주목하며 길을 열어왔다⁵⁰⁾. “이러한 연결의 노력은 416가족협의회 출범 선언의 첫 문구⁵¹⁾로 드러났다.”⁵²⁾

4. 인권운동은 무엇을 도모하는가

인권운동의 세월호 참사 대응은 여러 성격의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띠었다. 조효제는 『인권의 지평』에서 인권운동의 정형을 “침해 발생 - 진상규명 - 책임소재 - 가해자 처벌 - 피해복원 - 재발방지”라고 요약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운동은 이미 전형적인 인권단체 활동을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폭로하고 고발해온 장애인 운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주거권 문제로 운동의 지평을 넓히며 ‘탈시설 권리 선언’을 만들고 지자체와 싸운다. 인권운동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피해자 지원, 인권침해 폭로와 시정 요구, 당사자 권한강화, 대안담론의 모색 등 여러 활동들로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인권운동이 주도한 과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되새겨볼만하다. 조효제는 위 책에서, 인권운동이 정형에 갇히게 될 때 “원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채 인권침해를 비정상적 일탈로만 한정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침해’보다 ‘구조적 문제’로 먼저 인식되었다. 그래서 인권운동의 정형으로 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한국의 인권운동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수 있었고 지금도 여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권운동은 세월호 참사가 건넨 질문을 부여잡고 ‘인권의 지평’을 묵묵히 열어가고 있다. 권리의 이름을 불러내며 ‘해결’하기보다는 인권이 ‘달성’되기를 도모하며, 인권이 놓인 근본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며,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감히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를 세우기 위한 궤도를 만들자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48) 세월호 참사 대응의 큰 흐름이 평등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참사 해결의 주요 과제로 놓지 않는 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히 이러한 흐름은 416운동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화물기사들이 416가족협의회 회원이 됐으며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위한 운동이 자리잡게 되었고 민간잠수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이 광범위하게 모아졌다.

49) 4.16인권선언 제안문,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2015.4.14.

50) 2015년에 이루어진 세월호참사 인권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한차례 정리한 활동이었다. 저마다 놓인 서로 다른 위치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겪도록 했는지, 그래서 각자 겪게 된 문제들은 무엇이며, 그것은 다시 어떻게 참사를 통해 연결되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51)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출범 선언문 ; 4·16 세월호 참사 후 285일 째를 맞는 저희 피해자와 가족들은 온전한 선체인양, 실종자 완전수습, 철저한 진상규명 및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Sewol Families for Truth and A Safer Society’)”(이하 약칭, “416 가족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세월호 탑승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 특히, 희생자와 실종자, 생존자와 희생자, 단원고와 일반인 등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52) 이은정, ‘가려진 고통, 알아야 했던 이야기’, <인권오름> 426호, 2015.2.12.

그러나 제안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 실제로 인권선언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 쟁점들을 만난다.

416인권선언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짚을 것이 있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인권운동과 다른 운동은 매우 긴밀하게 결합했다. 시민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공동 대응을 모색할 때 “힘을 결집”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⁵³⁾. 한국의 인권운동은 그동안에도 다른 운동과 다양한 계기로 만나왔다. 인권운동의 과제를 인권의 익숙한 틀에 한정하지 않아온 측면도 있고 인권의 가치가 사회운동 전반을 가로지르길 기대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인권의 ‘중립성’보다 당파성-피해/당사자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을 더욱 드러내왔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구조적 인권침해’에 주목하는 경향과도 연관된다. 서로 다른 운동이 연결되는 만큼 구조적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서 4.16연대로 이어지는 흐름에서처럼 굽고 길게 결합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다. 이것 역시 세월호 참사 자체로부터 형성된 결과일 듯하다. 어쨌든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존엄과 안전’이라는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었으며⁵⁴⁾ 4.16인권선언운동이 풀뿌리토론을 시도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되기도 했다.

5. 인권의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선언운동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존엄, 안전, 인권, 선언이라는 말 외에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았다. 제안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단박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 말들이 주는 울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말을 넘어선 모든 것이 질문으로 남았다. 왜? 어떻게? 무엇을? 인권선언운동을 향한 질문들은 대부분 ‘인권’의 쟁점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규범을 만들자는 것인지, 지향을 밝히자는 것인지 물었다. 근대 국가 체제는 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내세우며 성립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것을 모든 정부의 약속으로 확인시켰고 국제인권규범들이 만들어졌다. 각 국가마다 인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고 인권 보장을 꺾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이나 제도는 언제나 한계가 분명했다. 때로는 인권 침해가 법이나 제도로 보증되기도 했다. 한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나 각종 재개발 관련 법률만 떠올려도 알 수 있다. 결국 법이나 제도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힘이야말로 인권을 실현해가는 근본적 힘이다⁵⁵⁾. 그러니 함께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에 힘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저 지향

53) 이 시기는 유가족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시기이고, 이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 범시민사회단체 연대의 틀이 만들어지던 시기이며, 만민공동회나 가만히있으라 등 구체적인 행동이 확장되던 시기다. 범인권단체 간담회에 모인 많은 활동가들은 “범국민대책기구의 구성에 함께 하며 힘을 결집시키되 인권단체들이 책임질 역할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54) 416운동에 ‘존엄과 안전’으로 표상된 인권의 문제의식이 녹아든 만큼 인권운동의 독자성이 모호해지기도 했다. 다양한 위치로 흩어져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4.16인권선언운동의 경험을 더욱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나누는 일이 숙제처럼 남아있다.

55) 법이나 제도를 통해 인권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소중하다. 엄밀히 말해서 법제도나 아니냐는 쟁점의 구도는 부적절하다.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인민의 힘을 키우는 것은 언제나 맞물려 있다. 맞물린 관계를 살피며 현실에서 힘의 역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4.16인권선언과 관련해서 이 토론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법제화를 염두에 두면서 인권선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힘의 구도에서 법제화는 가시권에 있기 어려웠다. 물론 인권선언은 적절한 시기에 법이나 조례 제정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증되지 못하는 권리들은 흩어진 말에 그칠 수 있다. 우리는 매번 처음인 것처럼 재난참사를

을 밝히는 선언일 뿐이라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참혹함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투쟁의 과제가 쌓여있는데 ‘지금도 인권할 때인가’. 인권 선언운동은 ‘이제라도 인권할 때’라고 대답했다. 인권이 무시된 결과가 세월호 참사 아닌가. 소중한 사람을 잃고 권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권리를 깨닫게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인권을 경시했던 것이 문제라면, 인권선언을 ‘아래로부터’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참사를 겪은 사람들의 언어로부터 인권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인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인권교육의 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기존에 진행된 대부분의 선언운동이 전문가나 활동가의 초안에 기댔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만든다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막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권선언운동의 초기에는 선언문을 토론의 기초자료이자 교육의 자료로 염두에 두면서 초안을 준비했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한 사건이기도 한 만큼 인권을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인권을 익히는 것은 규범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떤 감각이 획득될 때 인권은 이해된다. 인권운동이 오래 동안 쌓아온 인권교육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인권을 발견할 수 있음도 확인해왔기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풀뿌리토론을 기획할 수 있기도 했다. 풀뿌리토론은 각자 겪은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인권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진했다.

넉 달에 걸쳐 진행된 풀뿌리토론의 결과는 놀라웠다⁵⁶⁾.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고민과 의지가 만나면서 인권의 폭과 깊이는 넓고 깊어졌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설명할 때 꺼내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말할 권리, 들릴 권리, 평등, 물질적 조건 등이 모두 담겼다. 권리의 영역으로 보더라도 재난참사에서 언급되어야 할 권리,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색되어야 할 권리 등이 망라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갇들어있는 인권의 감각을 말들로 꺼내어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풀뿌리토론의 과정은 인권선언이 힘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사람의 수나 선언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권을 발견하고 서로 약속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야말로 힘의 근거다.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존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웠다. 이야기의 장소만 열린다면 언제든지 서로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밝힐 수 있고 행동을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416인권선언은 다시 시작점에 놓여 있다. 인권선언의 가능성을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현실로 만드는 것은 대중이다.

6. 대중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416운동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래군은 그 특징을 수평성, 다양성, 자발성으로 꼽는다⁵⁷⁾. 수직적 관계를 거부하고, 구성이나 활동 방식이 다양하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416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와 같은 특징이 맞물려 통합적 힘을 만들어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뭐라 요약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이, 평등

겪어서는 안 된다.

56) 풀뿌리토론의 결과 보고서는 2차 전체회의 자료집에 실렸으며 〈인권오름〉 462호부터 464호까지 4회로 나누어 연재되었다.

57) 박래군, ‘416운동’의 현재와 전망, 〈4.16세월호참사의 교훈과 앞으로 가야할 길〉 토론회 발표 원고를 보완한 미발표 원고.

하게 둘러앉아, 인권선언을 만들자는 목표를 두고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의 선언이 만들어졌다.

인권운동은 그 자체로 대중운동은 아니다. 뭉쳐서 함께 싸울 조직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야기 들어줄 이조차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발길이 이끌렸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길을 열어왔다. 그래서 오히려 인권의 이야기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튕겨나오는지를 더 자주 느꼈던 것도 같다. 그간 대중조직과 만나온 방식도 지 지나 엄호, 지원에 가까웠다. 이때의 인권은 상당 부분 도구적이기도 했다.

인권선언운동은 그동안 인권운동이 대중과 만나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인권’의 기획으로 1천 여 명의 시민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만들어낸 경험은 전례가 드물다. 한편으로는 416운동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고 4.16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가능했다. “삶과 죽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안전을 위협하는 권력의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통해 생명과 존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해보자. 어떤 힘이 출현했고 생명과 존엄을 선언할 수 있었다. 인권선언은 인권의 선언이기보다는 힘의 선언이다. 존엄안전위가 그 힘이 “삶과 죽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안전을 위협하는 권력의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되도록 기여했다면 인권선언은 그것을 공포하도록 했다.

대중의 힘이 사회에 균열을 내며 터져 나올 때-예를 들어 광우병 촛불이나 희망버스- 인권운동은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해왔다. 대추리 투쟁에서 함께살자 농성촌 등으로 이어진 용산, 쌍차, 강정, 밀양 등의 싸움에 인권운동이 결합했던 경험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인권운동은 ‘연대’를 주목해왔다.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은 말하기의 장소를 열면서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 피해자 가족을 만나며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게 될 때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게 됐다는 시민의 이야기나, ‘우리끼리 하면 피해자니까 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 인권선언으로 보니까 모두의 권리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가족의 이야기는 인권이 어떻게 연대의 언어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풀뿌리토론을 하고 나서, 아파서 피하려고 했는데 함께 겪는 걸 알게 되니 용기를 얻었다는 소감들을 많이 얘기한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기꺼이 참사에 연루되려는 의지를 복돋고 저항에 가담하려는 행동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인권선언의 과제는 다시 ‘연대’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감각이 대중적으로 번질 수 있었다면, 여전히 대중의 벽에 부딪치고 있는 인권의 감각들은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청소년의 권리와 같은 것이 세월호 담론에서는 여전히 미끄러지고 있다. 풀뿌리토론의 과정에서 대중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기도 했고, 인권선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구체적 관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획도 아니었다. 어쩌면 이제 선언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다시 질문이다.

7. 우리는 무엇을 선언했는가

4.16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토론되었던 것 중 하나는 ‘책임’이다. 기존의 인권담론은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밝혀왔다. 최근에는 기업이라는 행위주체에게 책임 또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의 주체가 저야 할 책임 또는 의무에

대한 고민도 종종 제기됐으나 왜곡될 우려도 크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마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 참사를 낳은 사회를 용인해온 잘못을 반성하기도 했다. 기소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자들도 있다. 선장과 선원, 해경 123정장 등은 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처벌되었다. 한편 해경 지휘부, 언론, 국정원, 청와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할까. 인권의 선언이 새로운 책임의 구조를 밝혀갈 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선언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색이 이어져야 한다.

4.16인권선언은 권리의 목록이기도 하지만 체제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기도 했다. 권리의 목록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⁵⁸⁾. 그러나 인권은 목록으로 쪼개지지 않는다. “인권의 표출적 역할이 재발견되고, 근본 원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진전됨에 따라 인간 존엄성을 개별 권리들로 상상하고 실천해 온 기존 관행을 더는 답습할 수 없게 되었다.”⁵⁹⁾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한국 인권운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인권’의 길을 모색해왔다. 참사를 거치면서 더욱 절박해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 앞에 던져져있다. ‘인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롭게 열어야 할 길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4.16인권선언은 ‘말’을 만들어왔다. 누군가의 간절함이 인권의 ‘말’을 만나 몸에 새겨질 때 인권은 해방의 힘이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말의 과잉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사회를 열 수 있는 말들이 필요하다. 말은 사물이다. 말의 논리가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참사의 시간에 ‘인권’이 스스로를 던질 때 인권은 말을 얻으며 함께 해방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58) 인권운동은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낼 때 국제인권규약이나 문헌을 활용하여 근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4.16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재난참사 관련 국제인권 문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재난참사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어왔다. 대규모 재해가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재난참사와 관련한 권리와 정부의 의무 등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 등 재난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결정들도 있다. 앞으로 4.16운동이 이와 같은 내용들도 살필 필요가 있을 듯하다.

59) 조효제, 『인권의 지평』, 후마니타스, 396쪽.

〈세월호 사건이 한국인권운동에 던진 질문들〉에 대한 토론문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기존의 지배질서가 강요하는 ‘가만히 있으라’에 맞서 ‘끝까지 잊지 않겠다’, ‘기억하고 행동하겠다’,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것을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라고 집약하면서 이윤보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이라는 지향을 확산시켜 왔다. 그 과정을 ‘세월호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불과 운동 2년의 시점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는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갈래의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사회운동 진영에도 커다란 질문들을 던졌다. 발제문은 인권운동의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세월호운동의 궤적을 잘 짚어내고 있다. 그 궤적을 따르면서 몇 가지 생각을 보충해보겠다.

세월호운동의 확대와 지속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성명(2014.4.23)으로 인권운동이 먼저 말을 꺼내고 약 한달 뒤 5월 22일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618개 단체의 참여로 결성되었다. 이 때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호소했다. 이 서명운동은 이후 650만 서명으로 결실을 맺어 특별법 제정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국민대책회의는 △실종자 신속 구조, 희생자 추모,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대책 마련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활동기조로 정했다. 그러나 이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박근혜정부라는 벽에 부딪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특히 구조실패로 공적이 된 해경을 해체(사실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경비본부로 확대)하고, 침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기된 규제완화 문제는 ‘안전산업 육성’책으로 안전을 민간시장에 맡기는 식으로 되었다. 또한 정부는 사람들의 분노를 선장과 123정장, 유병언에게 집중되게 만들었고 침몰의 구조적 원인, 현장 구조실패의 지휘라인을 대중의 시야에서 가리려 했다. 대통령은 초기에 “진상규명에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유가족들이 애를 끓으며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해도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보수진영은 참사를 정치화하며 유가족을 공격하고 세월호운동에 흠집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 특조위 구성과 진상조사의 과정 하나하나를 박근혜정부는 가로막았다. 세월호운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규모 대중행동, 풀뿌리서명운동, 피해자지원, 기록보존, 인권선언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등을 다방면으로 엮어내며 416가족협의회, 사회운동단체, 풀뿌리모임들이 함께 2015년 6월 28일에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를 발족시켰다. 416연대는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되살리

고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길을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단체가 단기간에 회원이 5천명이 넘었다는 것은 이 운동의 의미, 참여도 등이 유례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운동이 ‘굵고 길게 결합’하고 있는 이유를 발제문은 ‘세월호 참사 자체로부터 형성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 진영, 학술, 문학, 언론, 정치,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세월호 참사가 제기하는 질문들을 외면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 운동과 활동의 과제에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끈질긴 활동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집단적 애도와 부채감, 유가족과의 교류의 경험과 감정이입,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체제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에 대한 분노, 진실을 외면하고 슬픔을 후벼 판 언론에 대한 불신 등이 저마다의 동력이 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권리

발제문에서 말하듯이, 보수적 담론의 언어로 여겨졌던 ‘안전’은 세월호운동에 있어서 새롭게 해석되고 조명되었다. ‘생명과 존엄을 위한 안전’이라는 표현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 혹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과 같은 추상적 혹은 치안적 의미로서의 ‘안전’에서 시민의 집단적 노력으로 구성하고 쟁취해야 할 권리로 안전을 여겨지게 만들었다. 안전에 대한 의미를 민중의 언어로 바꾸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는 안전을 단지 귀찮거나 ‘산업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운동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의 논리와 안전의 권리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의 피해는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가 떠안고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온전히 지지 않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권리 선언과 더불어 안전이 파괴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관주도의 안전담론을 역전시킬 운동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같은 위험정보에 대해 알 권리, 위험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화 근절,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처벌, 안전관련 규제 강화,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 등 갈 길이 멀지만 안전에 대한 운동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 보편화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언어를 보편적 권리가자 보편적 언어로 만드는 것에 있어 인권운동, 인권선언운동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 인권의 중립성이 아니라 당파성을 주목해왔다는 것 역시 인권운동의 장점이다. 발제문에서 ‘우리끼리 하면 피해자 말 같은데 인권선언으로 보니 모두의 권리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가족이야기 표현은 연대를 통한 보편적 권리로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화물차기사, 민간잠수사, 진도어민, 베트남 이주민, 러시아출신 학생 희생자의 가족,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등에 귀를 기울이며 이후 세월호 인권침해 실태조사로 모아낸 것은 소중한 성과다. 평등해야 안전할 수 있다는 인식과 그에 기반한 활동은 416피해자지원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희생자 및 피해자에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단원고재학생, 단원고교직원 포함.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의료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 등) 재난참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내고 그것이 단지 피해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416 인권선언

오랜 풀뿌리토론의 과정을 통해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세월호운동의 한 축이고 앞으로도 그러 하리라 생각한다. 조직이나 단체 중심의 접근으로서는 엄두가 안 났을 활동이었는데 인권운동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말하기의 장소를 열고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개인으로 혹은 작은 모임으로 세월호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열 세 개의 선언 목록은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드는 장구한 투쟁에 있어 든든한 근거가 되기에 별 모자람이 없다. 또한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는 각자의 다짐의 계기도 될 것이다. 사실 기존에 선언 운동이라는 방식은 익숙하지만 큰 울림이 없었는데, 발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풀뿌리토론이 인권선언의 힘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보인다. 선언이 운동의 무기가 되고 또한 운동의 변화 발전이 다시금 선언을 풍부하게 하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재난사고, 산재사망의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세월호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안전해지지 않았다. 큰 사고만 해도 서울지하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태백선 무궁화열차 충돌사고, 성남 판교 환풍구 덮개 붕괴 사고, 신고리원전 3호기 가스누출 사고,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SK하이닉스 가스누출 사고, 한화케미컬 가스누출 폭발사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강원도 캠핑장 화재사고, 강남 스크린도어 설비 사고, 광주 하남산단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공단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 등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계속 우리는 세월호와 다를 바 없는 한국호에 타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각성시켰고 지속적으로 그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대책점에는 ‘규제프리’니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자’니 하는, 이윤을 위해 위험을 만드는 세력이 있다. 기억, 진실, 생명, 안전을 위한 세월호운동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으로서 4·16운동

정원옥 (문화연구자)

1. 글의 목적

이 글은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례로서 4·16운동이 전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재난·참사 해결이 피해자·유가족들의 고립된 싸움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4·16 운동은 연대의 운동이 당사자운동과 거의 동시에,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그것은 다른 재난·참사와 달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목격자였다는 점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많은 시민들이 응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16 운동은 유가족이 중심이 된 당사자운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시민단체들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이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라고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4·16운동에서 나타난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함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2. 당사자, 당사자주의, 당사자운동

당사자운동에 대해 말하기 전에 누가 당사자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에 직접 관련된 사람, 법률상으로는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를 당하는 등 어떤 법률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⁶⁰⁾ 소송의 주체인 원고와 피고가 곧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의미는 더 확장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의된다. 나까니시 쇼요시에 따르면, “욕구를 가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당사자(당)가 된다.(...) 나의 현재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 않게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상력을 가졌을 때 처음으로 자기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 사람은 당사자가 된다.”⁶¹⁾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당사자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 등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영역에 포함시켰다.⁶²⁾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겼거나 침해당해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60) 두산백과·지식백과 법률용어 참조.

61) 나까니시 쇼요시(2005), “당사자주권”, 『장애인당사자주의의 대토론회: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말한다』, 23쪽.

62) 국가인권위원회(2012). 2012-2016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에의 욕구를 지닌 사람”, 요컨대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⁶³⁾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기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 소수자는 비로소 당사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재난지역의 주민, 환경 분쟁 지역의 주민, 국가폭력 피해자, 20대 청년, 노숙인, 가난한 예술가, 소비자 등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저항할 때 이들 모두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서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운동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입장의 차이가 내부적으로는 차별과 억압으로 작용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누가 당사자인가, 누가 운동을 대표할 자격을 얻는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주의의 개념 역시 법률적인 정의와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정의는 다르다. 법률적으로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主導權)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이라고 정의된다.⁶⁴⁾ 하지만 사회운동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⁶⁵⁾라는 슬로건에 함축된 당사자 배제 불가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강조하며, 전문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차이의 정치학을 지향”하므로 정치세력화가 강조되며,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주요특징이다.⁶⁶⁾ 소요시에게 당사자주의는 당사자주권이라는 더 강력한 표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당사자주권이란 “나 외의 누구도-국가-가족, 전문가-내가 누구이든 나의 욕구가 무엇이든 나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표명이다.”⁶⁷⁾ 요컨대 당사자주의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대변(대리)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의 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와 당사자주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대성에 따르면, “당사자라고 해서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단체라 해서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주의를 지지하고 당사자운동에 앞장설 수 있다. 당사자지만 당사자주의에 반대하고 당사자운동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당사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⁶⁸⁾ 이러한 관점에서는 당사자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당사자주의와 인권운동이 동질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섭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은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질성을 갖지만, 당사자주의가 인권운동을 비판하는 지점에서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우선, 당사자주의 입장에서는 인권운동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기회평등의 법적 보장은 비장애인 가운데에도 기회는

63)김지윤(2015), “개인소수자에서 당사자로의 임파워먼트 경험: 자립생활운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1쪽, 91쪽.

64)두산백과·지식백과 법률용어 참조.

65)장애인 운동의 슬로건이 된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가인 제임스 찰턴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James I. Charlton, *Nothing About Us without Us: Disability and Empower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제임스 찰턴(2009), 전지혜 역,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한 것은 없다』, 울력).

66)곽정란·김병하(2004),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57쪽; 김병하(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적 함의”, 『특수교육연구』 40-1, 5쪽.

67)나까니시 소요시, 앞의 논문, 24쪽.

68)김대성(2003),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 『진보평론』18, 181쪽.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 해결이 아니라는 본다. 나아가 인권의 보장은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을 보장할 뿐,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운동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⁶⁹⁾ 이러한 지적은 당사자주의의 핵심이 참여와 자기결정권에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당사자운동은 ‘정체성의 정치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사회운동’과 궤를 같이 해왔다. 당사자의 정체성에 따른 욕구가 운동의 동인이자,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운동에는 강한 실천력과 헌신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당사자운동이 갖는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도 인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 배제 불가론은 종종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빠져!”라는 발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태도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함께 운동해왔던 사람들, 특히 활동가와 전문가 집단을 허탈감과 회의에 빠지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운동은 제도화 국면에서 운동성을 급격히 잃는다는 문제 또한 갖고 있다. 사회운동이 제도에 편입되는 형태는 대체로 ‘일상화’, ‘포섭과 주변화’, ‘흡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상화란 제도권 행위자와 운동세력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익숙한 이슈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테면 운동 목표와 이슈가 제도권 기관의 프로그램화, 의제화, 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포섭은 운동조직이 제도적 절차가 보장하는 활동방식(대규모 동원이 필요한 집회나 시위보다는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청원과 서명에 의존하는 것)을 택하거나 제도적 자원(공적·사적 기금, 사회복지제도, 대중매체, 학교, 지방자치단체, 사기업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흡수는 운동이 제도 속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운동단체 출신 운동가가 제도권 정당에 들어가 의회에 진출하거나 행정 관료로 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⁷⁰⁾ 운동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초기의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조직이 분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당사자운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잘못된 당사자주의는 운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와의 연대를 와해시키기도 한다. 김대성은 장애인운동에 있어서 ‘장애의 무기화·상품화(상표화)’, 장애여성을 조직에서 방치하는 ‘장애의 방치’, 장애인 내에서도 소외되거나 소수자, 약자가 되는 장애유형을 만들어내는 ‘편향된 당사자주의’, ‘장애의 대상화’, ‘집단 이기주의’ 등을 유사당사자주의의 유형으로 꼽으며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⁷¹⁾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당사자가 되는 과거청산운동에서는 ‘피해자의 도덕화’가 잘못된 당사자주의의 유형으로 나타나곤 한다. 피해자는 “결백하고, 선행의 주체이고, 어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⁷²⁾라는 피해자의 이상화와 “도덕적으로 이상화된 피해자의 기억이 지배담론으로서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된다.”⁷³⁾

한편, 당사자주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김도현은 당사자주의는 운동의 이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자기 대표권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서의 당사자주의란 모든 대중운동에

69)이익섭(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 그 배경과 철학”, 『장애인당사자주의 대토론회: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말한다』, 14-15쪽.

70)오장미경(2005),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여성과 사회』16, 13~14쪽.

71)김대성, 앞의 논문, 184~185쪽.

72)양, 이연(2001), “모호성의 함정: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피해자 되기와 역사의 잔해”, 최정운 역, 『흔적』 2, 28쪽.

73)정원옥(2014),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 159쪽.

있어 그 출발점에 놓여 있는 기본적 원리들 중 하나이지만, 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혹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드러내주는 이념이 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운동 이념으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근거한 운동, 그리고 체제에 포섭된 운동세력의 이념 부재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⁷⁴⁾

당사자주의에 여러 문제들과 한계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사자주의가 갖는 문제와 한계를 피해갈 명쾌한 해법 또한 없다. 당사자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편향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대처하려는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연대의 운동은 당사자운동이 갖는 여러 문제들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신지영에 따르면, 접촉과 연대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쪽’의 특수성을 통해 ‘이쪽’의 특수성을 알게 되거나, ‘이쪽’에 있는 특수성을 통해 오히려 ‘저쪽’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되거나, 그러한 이해나 공감의 바로 표현되지는 않아도 몇 년이고 지난 어느 날 퍼뜩 섬광처럼 떠오르기도 한다.”⁷⁵⁾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혼자만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숨 쉴 구멍’이 마련될 수 있다. 법적인 당사자는 소송이 끝나면 그 지위도 종결되지만, 당사자운동에서의 당사자는 운동이 삶 자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긴 호흡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일이 당사자운동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3.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으로서 4·16운동

4·16운동은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유가족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유가족들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당사자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제 시민단체들의 연대와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당사자운동과 거의 동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4·16운동은 연대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연대를 요청하기도 전에 다양한 연대의 운동들이 자발적으로, 동시적으로 조직된 사례는 여타의 운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재난참사의 후속대책은 전적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의 몫이었으며, 그들만의 고립된 싸움이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4·16운동은 더욱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4·16운동이 당사자운동인 동시에 연대의 운동으로 전개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4·16이라는 사건이 던진 충격이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충격이 진실규명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만든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다. 둘째로는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의 과정, 침몰된 이후 이른바 ‘골든타임’ 동안 사건 현장에서 벌어졌던 온갖 부조리와 부정의를 온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연대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었던 ‘목적자’로서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셋째로는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유가족들의 고통과 어린 학생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을 동시에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시민사회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라

74) 김도현(2012),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진보평론』52, 173쪽.

75) 신지영(2016), 『마이너리티 코뮌: 동아시아 이방인이 듣고 쓰는 마을의 시공간』, 갈무리, 17쪽.

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5월 21일, 서강대 성당에서 열린 추모 미사에서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었던 ‘예은이’ 아빠 유경근씨는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해줄 것을 시민사회에 요청했고, “잊지 않겠습니다”는 4·16운동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되었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충격과 의혹, 온 국민이 사건의 전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였다는 점,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 “잊지 않겠습니다”가 4·16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는 점 등은 4·16운동이 ‘애도의 정치’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된다. 애도의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실한 대상을 “잊지 않겠다”는 우울증적 주체의 전략이며, 애도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애도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정의하는 의미에서 ‘애도의 정치’는 국가의 공식애도로부터 배제된 죽음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촉구하고, 압박함으로써 죽은 자에 대한 충실을 다하려고 하는 남은 자들의 모든 실천적 행동을 함축하는 것”이다.⁷⁶⁾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들 것을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촉구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4·16운동에 연대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희생자들을 합당하게 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는 4·16운동을 당사자운동이자 연대의 운동으로 이끈 매개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두 운동이 긴밀하게 연계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초기, 유가족들은 4·16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4·16 직후 가족대책위의 공식적인 파트너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 둘 뿐이었다. 물론 국민대책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지만, 유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반정부적인 구호나 내용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단체에 한에서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⁷⁷⁾ 유가족들은 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하는 집회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로 한동안 사회운동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8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로 발족한 국민대책회의는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를 열고 ‘기다림의 팽목항’ 버스를 운영하는 등 연대의 운동을 주도했다. 하지만, 연대의 실질적 동력은 시민사회단체들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 SNS 등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시민모임들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직접행동은 기록운동, 촛불행동, 기억행동, 예술행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4·16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4·16운동에서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은 거의 동시에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족이 중심이 되되, 기존의 시민단체들보다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광범위한 연대의 운동을 형성하면서 4·16운동의 실질적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초기 4·16운동에서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은 거리두기를 하며 독자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4·16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시민모임들의 연대는 점차 긴밀해졌고, 2015년 6월 28일 ‘4·16연대’가 공식출범하면서 당사자운동과 연대의 운동은 느슨한 형태의 연대에서 목표와 내용을 갖춘 조직적 연대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6)정원옥(2014),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박사학위학위 논문, 19쪽.

77)배명복,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중앙일보』, 2014. 8.5.

4. 당사자운동으로서의 4·16운동

4·16운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주체인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당사자운동이다. 유가족들이 그만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끝낼 수 없는 운동인 것이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4·16가족협의회)의 전신, 이하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느 사회운동조직보다 더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모든 투쟁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안산에서 진도까지 800킬로미터를 걷는 순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46일 단식투쟁, 국회와 청운동 동사무소, 광화문에서의 노숙농성, 식발투쟁 등 극한의 투쟁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3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건 발생 직후, 사건현장에 고립되어 있었던 사흘 동안 유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경험은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았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언론이 중앙대책본부의 발표를 ‘받아쓰기’하는 동안 국민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유가족들이 어떤 감정의 경험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국가를 믿고 인내했던 사흘 동안의 기다림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 유가족들은 스스로를 피해자 주체, 당사자로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청와대로 가자”라며 진도대교로 향했던 4월 19일 밤, 유가족들은 4·16운동의 당사자로서 첫 싸움을 벌였다. ‘다영이아빠’, 김현동씨는 이 싸움을 “이심전심으로 했던 싸움”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⁷⁸⁾ 고립된 사흘 동안 겪어야 했던 어떤 공통된 감정의 경험이 유가족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하나의 결사체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4월 19일 밤, 유가족들의 분노는 정확히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국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만큼 4·16운동 초기의 유가족들은 대통령을 설득하고 정부와 협상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향한 그들의 간곡한 충언은 “대한민국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폐와 무책임이 만연된 국가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4·16과 같은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자식들의 희생에 값하는 4·16의 해결은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죽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빛을 남겨두고” 간 아이들로 기억되는 것이어야 한다.⁷⁹⁾

유가족들의 이러한 입장은 4·16의 사건적 의미를 한국사회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기점으로서 규정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4·16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4·16 이전 사회와의 근본적 단절,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운동의 당사자가 된 것은 단지 자식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초유의 사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희생양이 된 ‘초유의 사건’에 대한 해법은 기존의 관성화 된 운동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다. 유가족들은 4·16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건의 해법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

78) 김현동 (2015), “오늘을 붙들어서, 되도록 내일로 미루지 마라”, 홍은전 채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창비, 294쪽.

79) 박보나, “저는 세월호 희생자 학생 누나입니다”, 『미디어몽구』, 2014. 7.7.

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연대의 운동을 조직하기보다는 유가족들 스스로의 힘으로, 유가족들만의 방식으로 4·16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5백 명에 이르는 부모들, 형제·자매들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가족대책위에는 위원장과 네 명의 부위원장이 있었으며, 장례지원분과, 진상규명분과, 심리치료분과, 대외협력분과, 진도지원분과 등이 있었고, 총무팀과 대변인, 법률자문팀, 각 반별 모임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조직의 구성으로만 본다면, 국민대책회의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4·16 해법의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대책위의 조직 구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변인이다. 대변인은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의견이나 입장을 밝혀 말하는 사람”을 뜻한다. 가족대책위의 규모가 5백 명에 달했으니 대변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5백 명이나 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기까지 지난하고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유가족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회운동에서는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유가족이 대변인이 되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대변인이라는 직함이 좀 낯설기는 했다. 왜 굳이 유가족을 대변인으로 세웠을까. 논지를 벗어난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유가족은 당사자인가, 대변인인가?

국가폭력 사건이나 재난참사의 경우, 당사자는 엄밀히 말해 유가족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당사자는 여성이고, 장애인 운동의 당사자는 장애인인듯이, 국가폭력 사건이나 재난참사의 경우 당사자는 희생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게 된 희생자들을 대신해 말할 줄 사람이 곧 대변인으로서의 유가족이 아닐까. 이럴 경우, 유가족은 당사자가 아니라, 희생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신 말하는 대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당사자 배제 불가론은 국가폭력 사건이나 재난참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가족이든 아니든 희생자의 입장에서 희생자의 마음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변인일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피해자 주체로서의 유가족의 권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재승은 “피해자와 유족이 주체로서 사건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최상책으로서 본질적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의 권리’를 비롯하여 유가족에게는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가 인권의 차원에서 정립되고 보장되어야 한다.⁸⁰⁾ 「4·16 인권선언」 제8조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즉,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시 당사자운동으로서의 4·16운동의 문제로 돌아오자면, 4·16운동에서 유가족들은 놀랍고도 헌신적인 투쟁을 보여주었지만,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운동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초기 4·16운동에서 당사자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폐해를 드러냈다. 당사자주의는 존중되어야

80)이재승(2016), “인권의 시각에서 본 세월호 사건”,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351쪽.

하지만, 당사자운동만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바꾸는 길고도 험난한 싸움에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다. 희생자들이 당한 고통에 공감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변인일 수 있으며, 대변인이기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고 연대하는 것은 당사자운동으로서의 4·16운동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16연대로의 조직적 전환은 그러한 성찰과 노력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연대의 운동으로서 4·16운동

4·16운동에서 4·16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장 두드러진 연대의 운동을 꼽으려면 단연 기록운동일 것이다. 4·16은 재난의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사건으로 불릴 만하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은 곧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실천적 노력으로 옮겨졌다.

재난의 기억은 재난이 남긴 흔적을 재료로, 시간성과 장소성을 매개로 구성된다. 기록 작업과 역사서술이 시간성을 매개로 하는 기억의 구성이라면, 사건부지의 흔적을 보존하고 추모비와 기념관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장소성을 매개로 한 기억의 구성인 것이다. 참사 직후 시간성을 매개로 한 기억의 구성 노력, 그 가운데서도 기록 작업을 통한 실천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⁸¹⁾ 시간성을 매개로 기억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은 구술 작업에서부터 희생자들의 유품이나 사진, 영상, 추모객들이 남긴 비망록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남긴 모든 흔적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416 TV’,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미디어팀’, ‘416기록단’,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등은 기록운동을 벌였던 시민모임들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장소성의 의미를 기억으로 구성하려는 노력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사건 직후부터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마련되었던 ‘합동분향소’를 비롯하여 단원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4·16 기억교실’, 단원고등학교 인근에 마련된 ‘4·16 기억저장소’, 제주도에 마련된 ‘추모공간 re:born’, 진도 팽목항과 창원시에 세워진 ‘기억의 벽’, 진도 팽목항 인근에 조성 중인 ‘세월호 기억의 숲’, 광화문의 ‘세월호광장’ 등은 모두 장소성을 매개로 4·16의 기억을 구성하려는 실천적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4·16 이후 시간성과 장소성을 매개로 재난의 흔적을 기억으로 구성하기 위한 운동들이 실천적 노력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4·16의 충격효과라고 볼 수 있다. 4·16의 충격은 재난에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난의 고통을 너무도 쉽게 잊었기 때문에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실제로, 4·16 이전에는 재난의 흔적을 기억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16개의 주요재난에 대한 백서의 발간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백서가 발간된 경우는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건, 씨

81) 권용찬(2014), “4·16 참사 기록 관리의 현황과 방향”,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57-260쪽; 심성보(2014), “4·16 세월호 참사 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14-26쪽; 오윤택(2014), “세월호 참사 아카이빙 활동경험과 아키비스트의 성장(1)”,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235쪽; 홍영의(2014),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5-252쪽; 홍원화(2014), “재난의 기록(백서)과 교훈”, 『건축』58-10, 2014, 14-18쪽; 김진성(2015),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사회적 역할”, 『기록학연구』44, 199-215쪽; 송주형(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44, 155-197쪽; 안병우(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44, 217-241쪽.

랜드화재사건, 대구지하철 참사, 천안함피격사건까지 6건에 불과했다.⁸²⁾ 사건부지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간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도 4·16이후의 일이다.⁸³⁾ 사건부지에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비는커녕 최소한의 표지()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은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마련되지 않아서 애도와 기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4·16 이후에야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4·16 기억교실’ 존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보여주듯이, 재난의 장소성을 보존하는 일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여전히 부재하다. 재난의 장소성은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보존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4·16운동에서 직접행동은 기록운동만이 아니라, 촛불행동·기억행동·예술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촛불행동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등장한 직접행동의 한 방식으로 꼽힌다. 2008년의 촛불집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접행동이었다면, 전국촛불지도가 그려졌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동네촛불’을 밝혔던 2014년의 촛불행동은 생명존중과 안전사회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가 4·16 이후 기억행동 혹은 예술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모임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 ‘리멤버 0416’,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세월호, 잊지 마세요’, ‘잊지 맙시다, 세월호’, ‘세월호 304 잊지 않을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서강인’,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구 교대인’,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진’, ‘세월호 기억엽서’, ‘Remembering Sewol Disaster’, ‘LA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침묵행동-가만히 있으라’, ‘검은티셔츠행동’,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테모당’, ‘노란손수건’, ‘노란리본공작소’, ‘416청와대행동기획단’, ‘세월호를 기억하는 미술인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술행동’, ‘세월호 게릴라 음악인’,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술행동’, ‘문화행동예술네트워크’ 등이 그것이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모임들이 4·16을 기억하려는 행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안산합동분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등에서 서명을 받거나 노란리본을 만들거나 분향소를 지키거나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잊지 않겠습니다”를 몸으로 실천한 연대의 운동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82) 홍원화(2014), “재난의 기록(백서)과 교훈”, 『건축』58-10, 2014, 15쪽.

83) 강희청, “‘씨랜드 참사’ 부지 추모공원 건립 추진”. 〈국민일보〉, 2014. 7. 21.; 김종술, “다섯 아이가 죽었는데…사설해병대캠프는 ‘영업 중’”, 〈오마이뉴스〉, 2014.7.18.; 박보희·최선·채상우, “잊혀진 참사…잡초에 묻힌 위령탑”, 〈이데일리〉, 2015. 5.15.; 심보선, “나는 용산참사 희생자, 그들을 잇는 통역자였다”, 〈한겨레〉, 2016.1.15.; 유성운, “삼풍백화점과 그라운드제로 그리고 세월호”, 〈중앙일보〉, 2015. 7.1.

도전받기, 애쓰기의 방향과 방법

타리/나영정 (장애여성공감, 퀴어활동가)

“현장에서 거리가 떨어진 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고, 거리가 가까운 이들은 ‘고통스러운 진실’에서 눈을 돌린다. 나는 이런 현상을 ‘동심원의 패러독스’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런 구조는 진상을 은폐하고 피해를 경시하게 만든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이나 잠재적 군사력 보유를 위해 원전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치명적인 천둥의 방자한 관리인들”(프리모 레비)을 이롭게 할 뿐이다. 피해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피해의 진실에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피해의 진원지에 가까운 이들일수록 용기를 내어 가혹한 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증언자(표현자)는 ‘표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증언(표상)에 도전해야만 하고, 독자는 스스로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더 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참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⁸⁴⁾

당사자 운동과 연대 운동 사이에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준 정원옥님의 발제문을 놓고 새삼 고민이 깊어졌다. 장애인, 장애여성, 여성, 성소수자 등의 ‘정체성’을 가진 운동을 주로 해오면서 언제나 ‘너의 운동은 보편적이냐?’라는, 때로는 무례한 질문을 받고, 이 운동을 보편성을 구성하는 독특한 관점의 움직임으로 만들고자 했었다고 표현해보자면, 이러한 관점에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416연대 등의 활동을 조망해보니 매우 새로운 느낌이 들고 이 운동이, 활동이, 고민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나는 사실 416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세월호를 사고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유가족들의 투쟁을 접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글을 읽고,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흔들렸음에도 그렇다. 어떤 압도된 상태에서 사고할 수 없는 느낌이 강했고, 이것은 꼭 활동가로서라기 보다 집회에 참여했던 무수한 시민1로서도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416인권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인권선언에 대해서 원탁테이블에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어깨를 부딪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 - 특히 ‘피난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했던 장애인의 경험, ‘불온한 당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했던 레즈비언 커플-을 접하면서 재난과 참사가 소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

84) 서경식 지음, 서은혜 옮김, [시의 힘], 현암사, p230-231

해서, 이 유가족들과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416인권선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운동과 연대운동을 연결지어서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당사자성의 의미는 정체성을 범주화한 각각의 운동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성운동의 경우 역사가 흘러오면서 ‘모든’ 여성의 단일한 억압 경험을 상정하기보다 페미니스트와 여성의 다른 차원들을 의미 있게 읽어내고, 각성된 의식이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렇게 성찰적으로 해석된 경험이 어떻게 의미 있는가를 주장하려고 애써왔다. 물론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여성혐오’ 문화를 통해서 모든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려는 구조적 문화가 존재하지만 이것을 깨나가려는 주체적인 과정이다. 성소수자 운동의 경우 당사자성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해본 경험이 없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커밍아웃을 통한 자기 정의가 워낙 중요하고, 신분제도나 복지제도가 미리 범주를 구성해주는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성소수자를 국가에 등록하거나 그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논쟁 또한 ‘아직’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가장 논의가 활발한 곳이 장애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제문에도 잘 정리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논쟁적이다. 진보적 장애운동계는 그동안 전문가주의에 대항하여 당사자주의를 내세운 맥락이 있지만 ‘생물학적 당사자성’ 보다 장애로 인한 억압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해방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특히나 운동이 제도와 만나면서 권리의 수혜자가 반드시 인식적 특권을 가지고 보다 많은 장애인의 해방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사자를 어떤 정체성의 발견과 구성, 문제를 확인하고 풀어나가면서 변화된 주체,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라고 정의했을 때 세월호참사의 유가족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성을 획득하였고, 또한 앞으로 계속 성찰과 변화를 요구받는 당사자일 것이다. 나의 부끄러운 고백은 416인권선언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함께 당사자성을 고민하는 주체로서 유가족과 나와서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매개하고 중재하고 또 다른 당사자가 되었던 인권활동가가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했다. 언제나 당사자성(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고민을 놓지 않았던,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갈등하면서 사건과 의미를 함께 만들어왔던 인권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느낀다. 나아가 이 ‘사이’ 공간과 역할은 사실 거의 모든 곳곳에 존재하고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연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다른 ‘당사자’ 운동들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재난참사 운동에 연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발제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전의 재난참사와 달리 자발적인 움직임이 거세게 올라왔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다. 국가의 무능력을 넘어 배신을 목격, 참사과정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희생자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죄책감, 그리고 유가족의 ‘잊지 말아달라, 행동해 달라’ 라는 절절한 호소. 그리고 내가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분노 또한 작동할 것이다.

416운동은 애도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생존자의 명예를

세우고,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으로 대표되는 희생자를 둘러싼 표상의 문제와 거기에서 소외된 생존자, ‘일반인’, 비정규직 교사와 노동자 등을 불러내었다. 이들의 증언과 주체화는 ‘어린 학생에 대한 죄책감’을 사회정의에 대한 연대투쟁으로 바꾸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세월호 참사가 까발린 국가권력과 폭력, 안전의 ‘외주화’ 등의 문제는 시민들이, 노조를 포함한 당사자 운동들이 자신이 어디쯤에 위치해있는가를 다시 가다듬어 보도록 하였다. 이는 송국현, 한광호 열사가, 육우당이, 그리고 여성살해 반대 운동이 바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뿌리깊은 차별에 기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사회와 우리의 몸을 바꾸어나감으로써 보편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연대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으며, 미봉책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폭력의 원인을 정신병으로,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만드는 어김없이 발생하는 적대적 개입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미 사회적 힘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연대의 운동으로 넘어서고 싶은 것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증언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다. 이 말은 너무나 만연한 여성에 대한 혐오의 구조, 노동자에 대한 탄압, 국가와 공공성의 부재,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멸시의 구조를 지적하면서도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묻지마 살인’이 사회적인 의미로 용인되고 있는 여성살해와 재난참사와 같은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언어이다. 하지만 그러한 비명이 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증언과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중요한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일은 이 전에 그런 희생자와 싸운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를 거기에서 찾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이곳에서 싸우고 공동의 기억을 만드는 힘이 생겨날 것 같다.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가져와서 내 삶과 운동에 적용시켜 보는 것, 만남을 통해서 상호적인 변화를 환영하는 것, 연대없이 만들어지는 운동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양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있다는 것. 이 말을 감히 생존자에게, 유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간에 다시금 전하고 그림으로써 몸과 마음의 부대낌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세월호 운동과 인권, 그리고 페미니즘: 공감력과 상상력의 복원을 향하여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 눈물이 없던 강의실

나는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울면 따라 우는 경우가 많다.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지없이 운다. 어떨 때는 울고 싶지 않은데도 운다. 상술 목적의 최루성 의도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음이 분명해 보이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술을 패썹해 하면서도 운다. 어쩔 도리가 없다. 가끔 그렇게 울고 난 후 주위에 있는 지인들의 시선 앞에서 겹연쩍어질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일, 우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프다고 말하는 일에 크게 주저하는 편은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감정에 깊이 빠지는 행위는 ‘여성스러운’ 일로 간주되어 왔고 나는 지금까지의 평생을 ‘여성’으로 살아왔어서 그런 나의 태도가 지탄의 대상이 된 적도 없었다. 근대 이후 이성을 통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되어왔고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신뢰하기 어려운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열등한 태도로 치부되어 왔다. 근대를 추동시켜 온 이러한 인식론에 따라 남성은 이성적 존재이고(여야하고) 여성은 감정적 존재이며 이성이 감정보다 우등한 것이듯이 남성은 여성보다 우등한 존재라는 입장이 견지되어 왔다. 근대적 성별의 탄생과 성별에 따른 근대적 분업의 고착화, 그리고 (자본주의적 노동이 부재하다고 여겨지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의 탄생 등의 맥락 안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압도된(되었다고 여겨진) 존재인 여성이라는 존재가 감정보다는 이성에 압도된(되어야 하는) 남성이라는 존재를 바로 그 사적 영역에서 감정적으로 위무하는 일을 하나의 ‘이상화된 여성적 성역할’로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내린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4월 16일 사건이 있은 후 있는 첫 강의를 들어가며 내가 강의실이 울음바다가 되는 상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강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와 거리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내려 강의실로 향하는 내내 나는 차가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착잡한 마음이었다. 길을 걸으며 유난히 많은 사망자들이 속한 십대 고등학생 집단을 보게 되면 거침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쩔 도리도 없었다.

강의실로 들어서며 그 대형강의실을 제법 채운 숫자의 학생들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천천히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본 것이었다. 전쟁통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만큼, 내 학생들이 멀쩡히 살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벽차게 고마웠던 때는 없었다. 세상에! 멀쩡히 살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벽차게 고마웠다는 말이다. 전쟁통도 아니었는데...

수업을 시작하려면 이제 무슨 말이든 입을 떼야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행을 떠나며 배에 올랐을 뿐인 멀쩡한 목숨들이, 사람들이, 따뜻한 피와 살, 웃음, 눈망울, 꿈, 약속, 계획...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되어야 할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채, 속수무책으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읽어야 하는 고문을 겪은 후가 아닌가? 일곱 살배기 혁규, 그 어린이가 두어살 어린 동생을 살리려고 제단에 할 수 있는 모든 애를 쓰면서 어른들이 구해줄테지, 형들과 누나들도 저렇게 그 어른들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어른들이 꼭 구하러 와줄테지 믿고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원망으로, 생사가 갈리는 순간의 공포로 바뀌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러다가, 차가운 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 앉으며 발 끝에, 발목에, 종아리에, 무릎에, 이내 허벅지와 허리춤으로, 가슴까지, 목까지, 콧구멍 바로 밑까지, 바닷물이 겨우 뜨고 있던 눈마저 가리며 차오르는 동안, **실시간으로**, 당연히 구해야지, 당연히 구조받고 있어야지, 그리고 있는 게 틀림없지라며 철썩같이 믿고 있던 그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숨이 막히고 있었다는 것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만나기로 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약속을 했던 사람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뒤로하고 생명의 빛, 내일의 약속, 모든 감각이, **실시간으로**, 스러져가는 것을, 숨이 막히는 것을,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구조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속수무책 응시하고 난 뒤였는데... 그들이 모두 죽은 뒤였는데,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구조되지 못한 뒤였는데, 계속되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소음이 되어 웅웅거리고 있는 가운데인데,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악몽이다. 당장 깨어나고 싶은 악몽. 아무도 죽지 않았다. 모두가 구조되었다. 국가란 국민을 살리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돈을 모아 생계를 보장해준다. 국민을 잘 살리라고, 잘 살림을 하라고. 그러니, 이것은 악몽임에 틀림이 없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무도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따위는 하지도 듣지도 않았다. 모두가 구조되었고 구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운항의 총책임자를 맡은 선장이다. 선장은 용감했고 냉철했고 단호했고 희생적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꿈일 것이다. 악몽일 것이다. 악몽...

강의실 안에서 나는 그리고 학생들은 여전히 그 악몽 속에 있었다. 악몽이었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따뜻한 살갓에 닿았을 차갑고 어두운 바닷물과 같이 차가운 막막함에 휩싸여 크게 한 번 숨을 쉬었다. 소용은 없었다. 그렇게 학생들을 바라본 채로 입을 벌렸다 오므리고, 바짝 마른 입술에 혀로 침을 축이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뒤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야 겨우 첫 말을 떼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무사히 오늘도 수업을 들으러 와 앉아있어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겨우 그 말을 뱉고서 나는 다시 아랫입술을 지긋이 깨물어야 했다. 눈가에 무겁게 고여 연신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다. 그렇게 눈물을 참아보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나는 그냥 학생들 곁으로 다가가 서로를 껴안고 영영 울고만 싶었다. 수업 따위가, 강의 따위가, 이 순간 무슨 우선권을 가진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더 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 속에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슬픔에 빠지는 일, 함께 우는 일이어야 했다. 그리고 일어서면, 어찌면 그 다음을 우리가 함께 논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강의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은 나를 무척이나 난감하게 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더러 착잡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들이 보였으나 그것이 슬픔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다. 계 중에 또 더러는 언짢은 표정을 여과없이 나타내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왜 여기서까지 이러느냐는 표정이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진 표정일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그때 한 학생이 내게 말했다. “교수님, 울지 마세요.”

2. 공감 그리고 상상력의 힘과 그것의 부재

폴 에얼릭과 로버트 온스타인과 같은 진화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지구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진화한 생명체가 갖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자 진화의 결과물이다. 단세포 동물에서 포유류로 옮겨 갈수록 공감력이 발달했고 소위 가장 진화한 고등동물일수록 더 뛰어난 공감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진화의 결과로 매우 발달된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감능력은 단순히 유전자를 통해서만, 즉,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유전자-문화 공진화(gene-culture coevolution)’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또한 이 진화과정에 나머지 반쪽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진화란 문화에 기반을 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4.16 세월호 사건이 있는 직후의 첫 강의시간에 단 한명도 함께 울지 않는 광경을 접하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야할 것 같다. 그렇다. 그날 나는 큰 충격과 자괴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런 일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 맞는 것인가, 나는 혼란스러웠고 슬펐다. 나는 여성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학기에 맡은 과목은 〈성과 사랑〉이었다. 수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동안 수업을 위해 내가 요구한 텍스트들을 성실하게 읽어 왔고, 매주 개별 쪽글을 제출했고, 조별토론에 나름대로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고, 전체 토론을 벌이면 나름대로의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훌륭한 학생들이었다. 내게 그들은 4.16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4.16 이후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스토펜 메스트로비치(2014)는 [탈감정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무기력한 무심함과 천박한 감정적 반응이 현대 서구의 사회적 풍경을 특징짓는’다고 주장하였다(25쪽). 그는 현대 사회를 ‘탈감정 사회(postemotional society)’라 규정짓고 이러한 사회를 ‘이전 시대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사건과 위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사회’라 정의내리고 있다. ‘탈감정 사회’의 사람들은 동정은 하지만 공감은 하지 않는다. 또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떤 책무의식 또는 책임의식도 가지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멈추게 하거나 그것에 변화를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가지지도 않는다. 혹여, ‘분노에서 동정심에 이르는 광대한 범위의 유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이 어떤 적절한 행위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또한, 설사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계적 사건의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어떤 일을 하기에는 무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18쪽). 그러므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안다는 것, 즉, 지식은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행위는 감정과 지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데 탈감정사회에서는 그러한 결합이

끊어져 있다(15쪽).

책 바바렛(2009)은 [감정과 사회학]에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감정은 ‘정치의 우연한 분열자가 아니라 정치에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은 정치과정을 지속시키고, 정치적 행위와 동원의 근간을 이루며, 정치제도에 착근되어 있다’(18쪽).

다시, 내 수업 강의실에 앉아있던 눈물없던 얼굴들을 떠올려본다. 바바렛의 말처럼,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신체적, 성향적 모습 속에서 표정으로 드러내며 ‘감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이고 따라서, ‘감정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체의 사고도 아니며,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설명의 언어도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관여하는 세계와의 직접적 접촉’(7~8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 직후의 강의실에서 보았던 그 눈물 없던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널리스트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이 그저 이미지화되어 단순히 앓을 위한 하나의 정보로서, 혹은 보는 이의 안도감을 위한 소비물로서 사용되고 말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절절히 공감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겪지 않은 나의 상태를 그저 다행스럽게 여기는 데에나 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이다. 그러니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리하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위 ‘안다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하기까지 한 일이다. 공감하지 못하고 이를 통해 그 일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사 누스바움(2013)이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인의 좋음(good)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는 윤리적 태도에 필수적인 요소’로 ‘문학적 상상력’을 들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윤리학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동떨어진 이들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 존재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할 것이고, 이러한 개입과 관련된 감정을 갖는 데도 실패할 것”(16~17쪽)이라 역설하였다. ‘집요할 정도로 정밀하게 인간 내면과 시대상을 담아내며 ‘현대문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20세기 최고’의 소설, ‘소설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저자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상황상황과 인물인물에 대한 그토록 상세하고 정밀한 묘사력을 발휘하면서 작품 속 화자의 입을 빌어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떤 탁월한 묘사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은 영화, <귀향(鬼郷)>에 대한 단상에서 장수희(2016)가 지적하듯, ‘슬펏다는, 내가 고통을 겪었던 그들에게 공감했다’는 것이 단지 스스로를 위한 것일 뿐인 ‘도덕적 위안’으로 그치거나 고통을 겪은 이들의 바로 그 ‘고통이라는 것이 현재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픔’에 그치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더 더듬기, 함께 있다는 것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혹은 우리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하는 주체, 즉, 주어의 자리’에 ‘우리’ 혹은 ‘나’가 아니라 ‘그들’을 위치시킴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우리’를 잊게 하고 정의로운 ‘우리’를 분리해냄으로써 도덕적인 안전함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치, 그 무능한 위치를 받아들이는 일을 먼저 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상력일 것이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감을 위한 상상력 말이다. 그런 상상력을 가질 때, 그리고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스바움의 말처럼, 인간의 존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윤리를 실천하는 진정한 인간 존재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인간의 존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권’이라 부른다.

3. 인권, 공감, 그리고 상상력

그러므로 인권은 지식에 바탕을 둔 논리만으로 설득되고 추구되고 향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감수성의 문제, 감정의 문제, 즉, 공감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공감력은 무엇보다도 상상력이 없이는 가지기 어렵다. 나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인 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최대한 고스란히 공감하는 능력, 나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분노없이 인권의 온전한 실현이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이 가진 권리를 일컫는다. 추상화된 그 권리 개념은 무엇보다 논리와 지식에 기반하여 탄생하였다. 지금 우리가 인권의 하나로 여기는 생명권을 근대 초기, 존 로크가 국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자연권으로 정초했을 때, 그 권리가 설정된 과정에는 무엇보다 논리와 지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생명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도, 이에 따라, 국가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진다하여도 그런 사실을 ‘안다’는 것이 국가가 지키지 않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 격노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갖는 힘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모든 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권이 침해된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상력을 복원시키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페미니즘은 감정을 주변화시키면서 이성과 합리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감정의 영역을 여성적 영역이자 열등한 영역으로 치부해온 남성이성중심적인 근대적 지식체계와 지식생산 과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개입해 왔다. 근대의 ‘타자’로서 위치해 온 ‘여성’ 주체와 타자로서 여성들이 겪어온 문제들을 분석해 오면서 페미니스트들은 ‘타자의 윤리학’, ‘타자의 정치학’ 등을 통해 어떤 사상보다도 ‘타자’를 읽어내는 일에, 즉, 상상하고 공감하는 일과 능력을 키워왔다. 그러므로 나는 세월호 운동을 비롯한 모든 인권운동은 무엇보다도 페미니즘적 인식론과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힘을 얻기를 바란다. 페미니즘은 그 시작부터가 타자로서 소외된 자들의 서로에 대한 공감과 공감을 위한 상상력에 기반을 뒀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감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사상과 운동이어야 하고 또 그래왔기 때문이다.

4. 나아가며

몇일 전, 서울 강남에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직후, 수많은 여성들이 사망한 여성의 죽음을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애도하기 시작했으며 그 안타까운 죽음이 자신의 죽음일 수도 있었음을 절절히 공감하고 슬퍼하고 있다. 살인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라는 말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 방사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이 살인사건이 무엇보다도 ‘여성 혐오’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없이도 공감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공감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이들이 이 사건의 핵심과 사건에 이은 많은 여성들의 반응을 쉬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반응들 속에서 그날 내 강의에서 보았던 얼굴들을 떠올린다. 지식과 학점을 수집하기 위해 강의실에 앉아있던 눈물없는 그 얼굴들을. 그날, 그 강의실에서 무슨 말로 강의를 시작할 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해맸듯이, 눈물없는 멀뚱한 얼굴들의 향의를 차마 뿌리칠 수도 없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아득했듯이, 이 어처구니없는 혐오 살인사건을 정신병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설명하려들면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또 다른 여성들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을 마주하며 나는 또 한 번 아득한 절망감을 느낀다. 상상력이 장착되지 않은 인간에게, 공감력을 갖지 못한 인간에게 타인의 고통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4.16 이후, 나를 포함한 많이 이들이 일종의 외상후스트레스를 겪었다. 우울감, 생명감 저하, 의미상실감, 무기력함, 급작스런 분노감 등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그날의 외상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붕괴되어 고통을 잊고자 땅바닥의 흙을 핥고 또 핥는 어느 동물마냥 닥치는대로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핥았다. 그리고 그도 아니면 초점 잃은 눈동자처럼 멍한 마음으로 먼산 혹은 어떤 건물들을 목적도 의도도 없이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리를 걸을 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나 유치원을 다닐 것같은 아이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은 언제나 속절없이 무너졌고 눈가는 눈물로 무거워졌다. 낯설었던 그해의 봄은 그렇게 축축하고 차갑게 흘러갔고 뒤늦게 소란스럽게 피어오른 봄꽃에 원망스러운 눈길을 던지고는 했다. 무슨 잔치 냈다고, 너는 그렇게 해맑게 피는가,라고 물으면, 문득 꽃들조차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그들의 눈물이라고, 피라고, 살이라고 내게 속삭이며 후두둑 서둘러 지고는 하는 것도 같았다. 이듬해도 다시 4월 16일이 천연덕스럽게 돌아왔지만, 이미 어떤 4월 16일도 그 4월 16일 이전의 4월 16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그러는 동안, 아마도 많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특히, 가르치는 일에 염증을 느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러했듯이. 그날 이후,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일’과 ‘알게 하는 일’에 도무지 의미가 뒤지지 않았다.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없는 지식 따위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던 말인가.

이 글을 쓰는 일도 쉽지 않았다. 무엇을 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책무감으로, 평화문을 가고, 노란리본을 달고, 사망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해서 종종 불러주고, 생각해주고 하는 그런 일에 더해 지식인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무엇이든 더 해야한다는 책무감으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이 글을 시작했다. 그리고 쓰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주목하고 역설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공감력과 상상력의 복원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어떤 학술적 글도 의미없다 기피하고 오로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만을 붙들고 의지했던 것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공감력과 상상력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음을.

<참고문헌>

- 누스바움, 마사 (2013)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박용준 역, 궁리 (Martha C. Nussbaum, 1995,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Beacon Press).
- 메스트로비치, 스테판 G. (2014) 탈감정사회, 박형식 역, 한울 아카데미 (Stjepan G. Mestrovic, 1997, *The Postemotional Society*, SAGE)
- 바바렛, 잭 편역, (2009)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역, 이학사 (Jack Babalet, 2002, *Emotions and Sociology*, Blackwell)

Publishing).

손택, 수전 (2004) 타인의 고통, 이재원 역, 이후 (Susan Sontag, 2003,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Farrar, Straus and Giroux).

에얼릭, 폴 & 로버트 온스타인 (공저) (2011) 공감의 진화, 고기탁 역, 에이도스.

장수희 (2016) "비명이 도착할 때 - 〈귀향〉을 둘러싼 각축전과 말없는 비명", 여/성이론, 34호 (출간예정)

푸르스트, 마르셀 (2015)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희영 역, 민음사.

내가 만난 세월호 참사와 페미니즘

이호연 (인권운동사랑방,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1. 감정과 공감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 인권교육을 하면서 말과 감정을 읽고 그 안에서 인권의 언어와 감수성을 발견하고 인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서로 보게 하는 일을 함. 감정에 더디거나 무딘 편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보고 읽는 연습을 한 시간들을 보냄.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감정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이 많구나 생각했고 다시 감정에 대해 하나씩 배우게 된 시간.

4월 16일, 부산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었고, 교육참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건을 알게 됨.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실감이 안 나서 아무 느낌이 없었고 한참동안 티비를 거의 보지 않았음. 아니 볼 수 없었을 수도, 작가기록단에 결합하기 전까지 사건이 있었지만 꽤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유엔 각자의 서사가 존재. 먼저 기록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이런 힘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해줘서 고맙다",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말을 듣고 불편한 감정. 마치 누구나 힘들어해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들보다는 참사와 '그다지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면 불편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관찰냐'는 말 한마디 건네 본 적도 없다. 그렇게 계속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 '나는 이 일에 영향받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피하려고 했다.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한 후배가 죽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정도로는 슬퍼할 자격이 없다. 유난 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던 것 같다.(중략) 슬퍼하기 싫었고 슬퍼하면 안 됐는데 슬펐다. 나의 이상한 판단이 문제였던 것 같다. 내가 단원고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슬퍼할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했고 내 주변의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슬퍼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고 그렇지만 나는 슬펐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기억과 변명 : 단원고 졸업생의 이야기, 한세 「나다Wom」 11호

저는 대개 평범하게 살았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중간고사 기간이라 언론에서 "전원구조라네 잘 됐네" 그러고 시험공부 하러 다녔어요. 전원구조가 오보였고 잘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일부러 얘기를 회피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걸 알게 되면 바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사회가 원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제가 벗어날 것 같아서 제가 장녀인데 그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 아팠지만 그래서 더 외면했던 거 같아요. 어쩌다가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자리에 갔는데 아 이게 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은하, 416대학생 연대, 다시 봄이 올 거예요 1020 토크 콘서트에서)

저는 사실 세월호를 많이 외면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있고 나서는 시위도 나가고 분향소도 찾아다녔고 강연도 듣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하니깐 나 챙기기 힘들어서 많이 외면했던 거 같아요. 내가 그 분들의 슬픔을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그 분들 옆에서 싸울 수 있어 하면서 외면을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너무 겁쟁이라서 죄책감에 빠졌어요. 책에 있는 이시우님의 얘기를 읽고 나서 나도 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 같아요. 이 자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한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김호영, 다시 봄이 올 거예요 1020 토크 콘서트에서)

감정은 사회적 행위. 사회적 행위라는 의미는 관계, 장소, 시간 등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 이 사건과(참사의 당사자) 나를 어떤 관계로 놓을 건지, 내가 슬픔을 표현해도 인정받거나 공감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슬픔을 표현해도 괜찮은 장소인지(누군가에게는 괜찮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니기도 한), 언제 슬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사건 직후 '관심이 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슬픔을 표현하거나, 계속 슬퍼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보는). 성별과 나이, 국적 등에 따라 다른 사회적 시선과 규범들이 존재. 슬픔은 위계화, 성별화 되고,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은 시선(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속에 위치하게 됨.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 슬프지만 울지 않는(울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웃고 있지만 슬픈 사람도 있고, 화가 나지만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슬프지 않지만 슬퍼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음. 감정 상태는 하나의 감정으로 구성되지도 않음. 감정은 복합적. 또한 슬픔의 표현 방식도 다양. 감정은 사회적이기도 하지만 각자 느끼는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존중받아야 함.

공감은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회피, 외면, 두려움의 감정또한 공감의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건 사건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상태에서 겪게 되는 것 일 수 있고, 내가 이 사건과 어떻게 관계 설정(위치 잡기)을 할 것인지를 찾아가면서 겪는 혼란 일 수 있고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함. 서사는 개인의 경험(기억)과 세월호 참사가 만나고 세월호 참사가 나의 삶에 어떤 위치를 잡는 과정.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함께 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음.

세월호 참사에서 누구의 슬픔이 주로 얘기되었는가? 드러났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감정이 구성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누구의 서사가 주로 얘기되었는가? 등의 질문이 필요함.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는 누구의 서사인가? 이 서사가 중심에 있을 때 어떤 존재의 말이 들리지 않았거나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잡지 못했는가? 세월호 집회에 나온 청소년에게 어른들이 하는 말 '애들이 기특하네'를 들은 청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모마음'으로 얘기하면서 '부모'의 위치로 참사를 불러내는 방식은 참사의 담론 속에 있는 가족주의를 보게 함.

페미니즘은 그것이 누구의 관점인가를 질문을 해음. 그동안 여성들의 경험과 서사가 주로 남성들에 의해 대변되거나 남성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문제의식. 학문을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영역이 누구의 위치와 입장을 말하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는가. <금요일엔 돌아오렴>과 <다시 봄이 올 거예요 :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는 여성주의의 문제의식과 연결된 기록 활동임. 여전히 들어야 할 목소리가 많이 있음.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에 직접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기록은 참사에서 개인과 집단의 위치를 잡는 일이자, 드러나지 못한 또는 말했지만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를 드러내는 일, 관계의 다리를 잇는 일.

2. 페미니즘 공부를 하길 잘했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너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남서현이에요. 이게 내 삶이에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이제 아무리 해도 제 삶을 4월 16일 이전으로 돌릴 수 없잖아요.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게 형제자매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안쓰럽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희생학생 남지현의 언니 남서현,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북콘서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생각함. 아, 성폭력 피해자를 만났을 때,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였구나. 참사와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은 다르지만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짐. 고통이 어떤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을 갖는 문제인지, 피해자의 권리와 존중, 피해자화의 문제, 가해자 논리(참사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조 등이 닮아 있다는 것. 개인이 고통이 (개인적인 것)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는 문제설정.

페미니즘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삶을 이해, 공감, 폭력에 저항하는 실천은 참사의 피해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수성과 통할 수 있음. 참사의 피해자를 만나면서 페미니즘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알고 이 관점으로 자신의 인식과 삶을 재구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낌. 성폭력 피해자가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듯이 참사의 피해자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 참사와 젠더

아직 더 고민해 봐야 할 주제, 아니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한 참사와 젠더의 관계성. 인권실태조사에서 만난 생존학생 한 명이 이런 말을 함. "남자애들이 걱정이예요. 여자애들은 힘들다고 말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남자애들은 꺾꺾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게 되면 팍 터져요. 평상시에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말도 거의 안 해요" 희생자 형제자매 모임에 갔을 때도 여성이 대부분.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도 10, 20대 남성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게 어려운 일. 왜 그럴까? 성별 사회화의 특성이 참사의 말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심리적 외상 연구(트라우마)의 역사를 보면 탄환 충격 혹은 전쟁 신경증 연구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베트남 전쟁 이후 정점에 달함. 성폭력과 가정(아내)폭력에 대한 피해자 연구

는 여성 운동이 정치적 밑바탕이 됨. 한국사회의 경우 그동안 많은 참사가 있었지만 생존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질적 연구가 거의 없음. 젠더 구조 속에서 참사의 피해자들은 각각 어떤 다른 경험과 서사를 구성하는지. 불평등한 젠더 구조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 같은 사건을 겪은 사람의 트라우마에서 성별(gender)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등.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적 실천에 나선 여성들의 경험은 무엇이고,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전략들을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

주영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5부

종합토론

사회: 손희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